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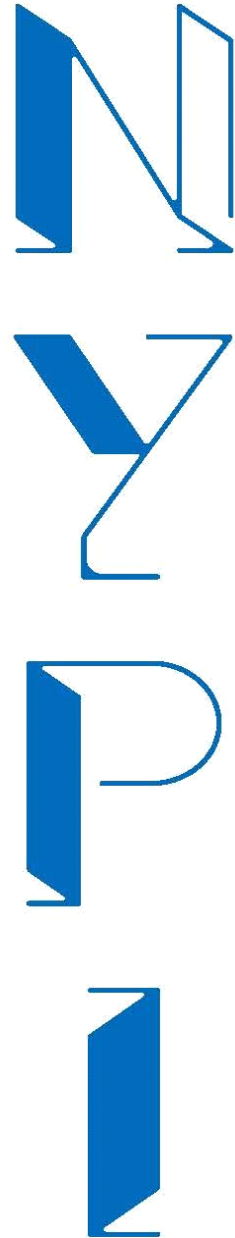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지향적 청소년 관련 법 정비 방안

일시 | 2019년 9월 26일(목) 14:00 ~ 17:00

장소 | 명지대학교 대회의실 (행정동 5층)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명지대학교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일시 : 2019년 9월 26일(목), 14:00~17:00
- 장소 : 명지대학교 대회의실 (행정동 5층)
-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명지대학교

시 간	세부 내용
14:00~14:30	사회 :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개회식] 개회사 : 송병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4:30~15:00	[발표 1] 미래지향적 청소년기본법 정비 방안 - 권일남(명지대학교 교수)
15:00~15:30	[발표 2] 미래지향적 청소년활동 진흥법 정비 방안 -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30~16:00	[발표 3]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00~17:00	좌장 :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종합토론] 1.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2. 배정수(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장) 3. 박선영(한국체육대학교 교수)
17:00~	폐회

목 차

○ 주제발표

- 발표 1. 미래지향적 「청소년기본법」 정비 방안 1
 _ 권일남 명지대학교 교수
- 발표 2. 미래지향적 「청소년활동 진흥법」 정비 방안 69
 _ 김영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3.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95
 _ 서정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종합토론 133

1. 김진호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2. 배정수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장
3. 박선영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미래지향적 「청소년 기본법」 정비 방안

권 일 남 명지대학교 교수

미래지향적 「청소년 기본법」 정비 방안

권 일 남 명지대학교 교수

I. 서론

1. 논의의 출발점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4년 전면 개정절차를 거치면서 청소년기본법도 기본법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실 초창기의 청소년기본법은 법체계상 기본법의 명칭은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행법으로서의 기능만을 강조하다 보니 기본법이면서 실행법인 다소 기묘한 역할을 가지게 되었고 그럼에도 상시적으로 청소년기본법이라는 의미를 당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본법의 의미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적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보다는 청소년관련부처가 어느 부처로 통합되거나 소속되는가에 따라서 해당 부처가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법상에서 청소년기본법과 상치되거나 불일치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부터이다.

즉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등으로 부처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마치 굴러온 돌과 박힌 돌과의 사활을 건 투쟁이 일어나게 된 점에서 청소년기본법 역시 법체계상 내용과 의미의 적절성이 존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커진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2004년 청소년기본법은 기본법체계상의 의미를 최대한 준용하고 동시에 실행법의 의미를 보완하게 되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의 상하위계체계를 갖추는 형식적 보완은 나름 성공리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법체계상의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내용적 측면에서도 당시의 청소년기본법이 온전한 성공을 지금도 담보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주변적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부분(저출산, 문제행동, 위기 및 비행정

소년극대, 우울과 심리적 불안감 고조, 게임중독과 성적 일탈 등 심화 등)이 더욱 빨라지고 있고 동시에 긍정적 청소년발달을 위한 환경(청소년활동의 축소와 부정성 심화, 청소년의 자율과 참여적 여건에 대한 수요 증대, 청소년선거권 등 인권과 권리의식의 고조 등)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 틀을 재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점이다.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이 아동과 청년이라는 대상에서 중간에 심각하게 끼어있음으로 중간 자적 입장에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더 축소지향적 시각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의 의미나 내용의 확대를 이를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약 57회의 입법제의를 통하여 활발한 개정요구가 있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하나 내용면에서 볼 때 청소년기본법 전반의 의미를 확장한 요구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청소년기본법의 의미를 재확인해 보고 현재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이를 청소년기본법이 충분히 반영가능한지, 그리고 보완할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추진방향과 목적

청소년기본법의 출발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향점이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도달점 목적을 두고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범주화해보고자 한다.

첫째, 헌법과 기본법의 지향점관계에서 청소년기본법의 위치를 분석해 보았다.

둘째, 헌법에서 지향하는 인간권리의 최상위 의미가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권리, 인권 등의 의미를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 보았다.

셋째, 청소년기본법개정을 요청한 부분과 이의 입법화과정에서 논의된 주된 사항을 분석하여 청소년기본법 의미에 대한 인식적 논의를 분석하였다.

넷째,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행의 청소년기본법상 미래지향적 청소년권리와 참여, 자율 등의 의미에 부합되는 의미전환의 기초자료로 청소년기본법을 보완구성하였다.

II. 청소년기본법의 구성과 지향점

1. 헌법, 기본법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의 관계

국가는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되 국가주권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간이 되는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부터 각종 현안을 이루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내용적으로는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형성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복잡한 법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오랜기간 동안 이어져 온 규범을 명문화한 헌법은 국가권력의 조직이나 기능방식 및 개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성문이나 불문의 형태로 된 근본법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김성준, 2009 재인용)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은 국가의 근간을 이룸은 물론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는 전체적 방향을 읽을 수 있고 동시에 이러한 의미를 잘 구성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방안은 다른 법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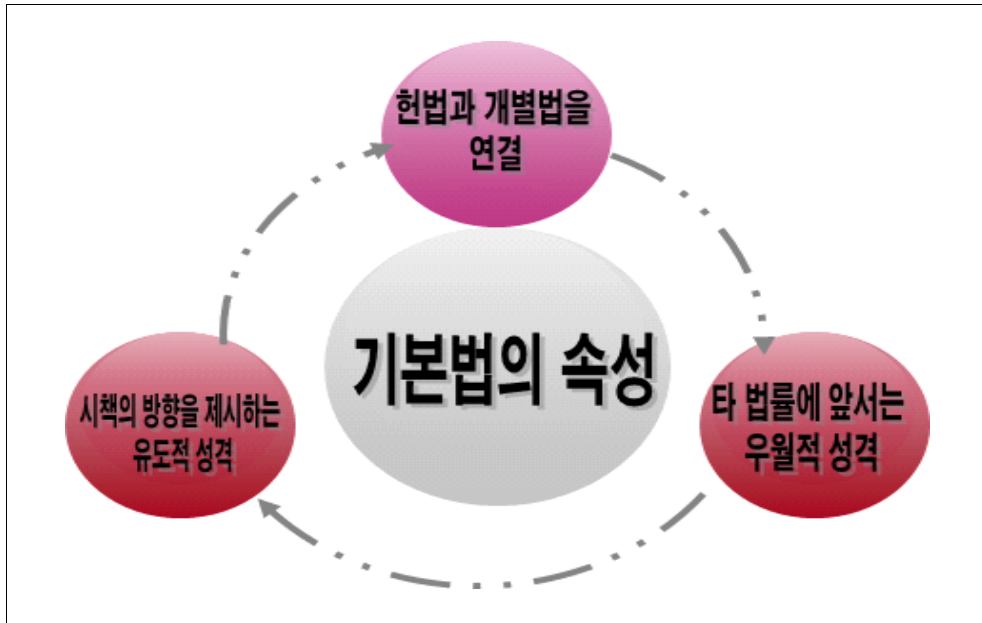
그래서 헌법을 필두로 제반 법적 기준을 제시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법체계가 등장하게 된다. 이중 법체계의 구성중에서 특이한 점은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자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기본법의 의미나 지향하는 바를 정확하게 판단해야만 기본법을 통해서 어떠한 점을 말하고자 하는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기본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 대해서 국가의 제도·정책 등에 관한 기본방침·프로그램·대강을 명시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법률(박정훈, 2009:295)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법의 특징을 보면 [그림1]에서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헌법의 범주를 넘어서 수 없으며 헌법에 지향하는 바를 개별법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를 추가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점과 관념적 특성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첫째, 헌법과 개별법을 연결하는 속성이 강한 기본법은 헌법에서 지향하는 바를 근간으로 해야 하며 헌법에서 해당 분야의 대상을 거명하는 영역에 대한 보호적 속성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기본법은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보편적 의미를 통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이나 여건을 보여주는 성향이 강하다. 즉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내도록 하는 유도적 성격을 보여주고 제시함으로써 정책이나 법적 의미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향성이 중요함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방향적 특성은 법률의 제정과 함께 조례 등과 같은 하위 법령의 체계적 구성을 명시적으로 구



[그림 1] 기본법의 속성

자료 : 박정훈, 2009 자료 요약정리.

성하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기본법이 단순히 의미추종의 정도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법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지시적 의미가 강하다.

첫째, 헌법과 개별법을 연결하는 속성이 강한 기본법은 헌법에서 지향하는 바를 근간으로 해야 하며 헌법에서 해당 분야의 대상을 거명하는 영역에 대한 보호적 속성에 충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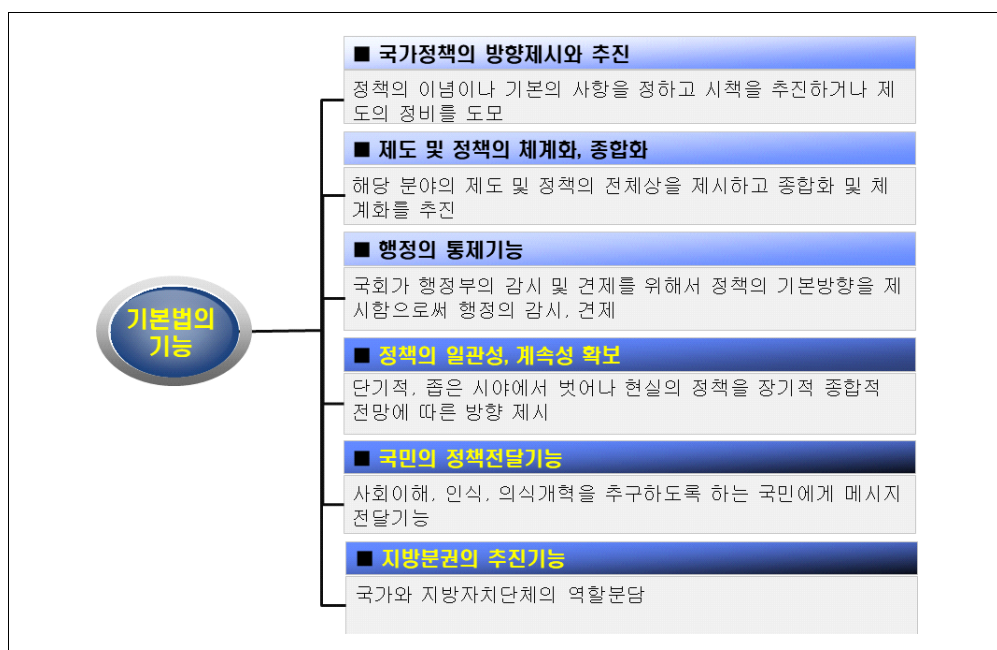
둘째, 기본법은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보편적 의미를 통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이나 여건을 보여주는 성향이 강하다. 즉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내도록 하는 유도적 성격을 보여주고 제시함으로써 정책이나 법적 의미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향성이 중요함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방향적 특성은 법률의 제정과 함께 조례 등과 같은 하위 법령의 체계적 구성을 명시적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기본법이 단순히 의미추종의 정도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법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지시적 의미가 강하다.

셋째, 기본법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부분으로서 기본법은 타 법에 우선시하여 추진되어질 수 있다는 우월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우월적 의미는 매우 강력한 성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률에서 정한 의미에 앞서서 본 기본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 등을 강력하게 설명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법적 저항성을 줄이고 동시에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도록 배경을 만들어 주는 유도적 성향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지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은 기본법이 타 법에 우선하여 반드시 지켜져

야 한다는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헌법의 어느 부문에도 기본법이 타 법에 우선시하여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법에 우선시되는 상위법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기본법의 의미를 통해서 개별법의 추진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과제나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우선시하여 추진해야 함을 이해시키는 방안이 제시된다. 대부분 기본법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법체계에서 미흡하거나 사회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발행하였음에도 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당위성이 커진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당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영도(2006:19)는 기본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분야에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러 법률과 달리 기본이라는 의미를 앞에 붙임으로써 여타 법의 추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의미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는 인식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법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점에서 반드시 수반해야 하나 아직 법적 기반이나 제도적 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지지 않은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각이 매우 강조되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기본법의 기능을 분석해 본 결과 [그림2]와 같은 의미로 기본법의 제정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영도, 2006:24).



[그림 2] 기본법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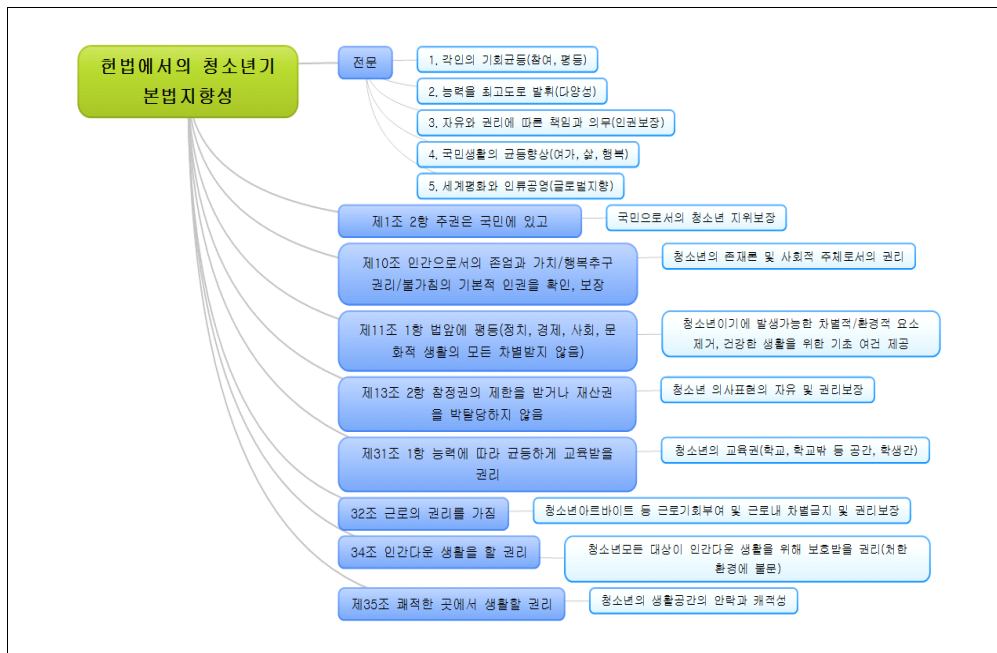
박영도, 2006:24. 수정보완

기본법의 기능을 보면 다양한 관점에서 그 특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관점에서 미흡하거나 소홀한 부분을 돌아보고 이를 보완해내는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기본법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수반해야 할 정책이나 제도적 영역에서 중시해야 할 부분이나 반드시 지켜야 할 영역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하여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강조되는 정책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적극 해결하고 지지해 나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에서의 주된 내용을 청소년기본법과 연계해 볼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헌법에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명료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조직의 기본과 근간을 이루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는 바 이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한 전문의 내용과 헌법의 조항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부여가능한 의미를 해석해 보면 [그림3]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헌법에서의 청소년기본권 요구의미

첫째, 모든 사람의 개개인에게 기회균등을 천명하고 있다. 기회균등의 출발점은 참여와 평등적 시각의 기회부여와 실제적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바로 참정권과 직결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정권과 평등권으로서의 헌법은 제1조 2항(주권은 국민에 있음)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인이라는 지위보장을 받고 있는 바 청소년역시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한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의 권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청소년에게 부여해야 할 주체적 권리가 구체적이며 확고하게 제시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 13조2항(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음)에서 말하는 참정권의 부여, 제 32조(근로의 권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일시적 근로를 하거나 근로현장에서 성인으로부터 청소년이기에 받는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가장 중시해야 할 점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이기에 자칫 나타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지위보장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다양성의 차원에서 인정감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은 모든 조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여기서 다소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즉 모든 대상이 동일한 능력과 역량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다양한 차이에 대하여 차별이 아닌 차이를 존중하고 더욱 나은 성취도를 얻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헌법 제 31조(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능력의 다과를 인정하되 적어도 교육에서만은 이러한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다양성의 인정과정에서 자칫 수월성의 차별을 범하기 쉬운 오류에 자주 빠지게 된다. 이러한 차이를 경험하는 사례는 우리는 이미 수많은 논의에서 경험하고 있다¹⁾. 특히 청소년에게는 교육의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라는 과정에서 이미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선가르기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규칙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 사고가 지배하게 된다. 우리는 교권과 인권사이의 차별과 편가르기를 통해서 이러한 사고가 일반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²⁾.

- 1) 최근 교육현안에서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자사고의 재평가와 재지정의 문제가 정치적 소용돌이로 내몰리면서 탈락을 위한 평가, 목표를 정하고 행하는 평가라는 갈등이 매우 커지고 있다. 교육의 수월성과 보편성은 지난 수세기동안 교육의 비판을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기중심적 논리로서 각기 입장에서 타당한 논리를 탄탄하게 수렴해 왔다. 하지만 교육의 차별이라는 의식이 청소년이나 학생에게 적용될 때에는 매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수월성을 포기하고 보편적 일관성을 선택할 것이냐, 개인의 입장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수월성교육을 행할 것이냐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보편성과 수월성의 고민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며 수월성교육을 위해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한다는 논리보다는 잠자는 학생, 학습에 무관심한 학생들의 성취동기와 학습욕구를 어떻게 올리고 이들의 관심사를 끌어 올리는 몫 역시 교사의 중요한 임무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2) 지난 몇십년전부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온 여러 사유가 많음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저항과 유지라는 긴장성이 심화된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주로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대항적 성격이 강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교사와 학생간의 인권을 포용하려는 자세보다는 대립의 수단이나 적대적 수단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가? 아마도 이는 교사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가 청소년의 근본적인 인권의 의미보다는 사회 통념상 이해하고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는 역할우선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즉 교사는 교복이나 두발자율화의 의미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최근에는 학생과 학교밖청소년간의 공간적 차별성도 나타나고 있고 또 학교내에 있는 학생간에도 요구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다양성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실제로 부여해 주는가는 중요한 화두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최상의 정언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권의 보장이라는 의미에 대한 규정이 잘 나타나야 한다. 헌법 제 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과 제 32조(근로의 권리), 제 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통해서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 가를 선언하고 있다. 사실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신분의 제약,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의 사회적 불이익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오히려 권리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유린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큰 존재이다. 경제적 자립능력이 부족하고 신체적으로도 미성숙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매우 강한 현실에서 주체적이고 선도적인 자기선언적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청소년은 거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식적 개선과 실제적인 기능의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헌법 제 11조(법앞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 제 35조(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권리)를 통해서 청소년이 살아갈 생활공간의 쾌적성을 이루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이 살아갈 공간은 가깝게는 가정에서부터 가정밖 생활, 쉼터, 놀이터, 생활환경, 학교환경 등 청소년이 가는 모든 공간이 바로 쾌적한 여건을 구비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부족한 공간은 곧 유해한 환경으로 청소년들이 내몰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즉시 생활환경의 쾌적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 중에는 가정이 기대이하의 쾌적성을 보여주고 있는 곳도 너무 많다. 또한 일시적으로 도피를 이룬 공간 역시 안락함과 편안함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문화예술적으로도 안락함과 위안을 얻어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청소년에게 행복지수의 낮음을 염려하는 목소리는 너무도 많다. 하지만 행복지수가 낮음이 모두 학교의 탓과 공부의 문제, 진로미비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비록 이러한 요소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학업과 공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문화예술, 체육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수십년동안 교사가 지켜온 성과중심적 가치가 이미 빛을 발휘하였고 또 동의를 충분히 얻어 온 바 이러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려는데 있어서 교사의 권위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복이나 두발, 화장, 각종 청소년들의 요구가 청소년기에는 해서는 안되고 교사의 또는 학교의 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면에는 적어도 이것을 교사가 지향하는 교권의 마지막 보류이자 교사의 임무라 믿는 잘못된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그래서 교사는 학칙이 위반에 민감하고 또 청소년들의 요구에 기반한 자율화는 교사의 교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여기는 반발심의 극단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에너지원을 발현시키도록 해 주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체계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개선시키는 노력 역시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넷째, 대한민국 국민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방향은 곧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역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중국에는 대한민국의 위상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국민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더 이상 대한민국 자체만으로 살아감이 아닌 세계와 함께하며 글로벌지향을 목표로 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아마도 이는 작금의 여러 유형의 글로벌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점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세계로의 확산적 지향성은 물론 다문화, 외국인의 대한민국 유입에 따른 수렴적 글로벌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동반성장의 인재가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헌법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볼 때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은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된다. 사실 헌법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적 의미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는 모든 노력을 통하여 인간 개개인의 삶을 안락하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듦과 동시에 세계평화를 주도한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시각에서 볼 때 다른 영역의 사회적 구성원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이 청소년이었으며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권과 권리의 주장이라는 영역의 문제라는 점에서 청소년기본법은 헌법의 의미를 가장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이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기본법의 사회적 의의

헌법 제3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에서 볼 때 청소년이 인간다운 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고 이행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잘 자라도록 하는데 정당하게 대우받고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삶을 영위하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진다.

우선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존재나 자주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주체적 대상이라기보다는 웬지 수동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그리면서 인권과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되는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관념적 시각이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내재되게 된 배경에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의 편협성에 기인하고 있다.

자고로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60년대 이후 미성년자 보호라는 매우 한정적이고 폐쇄적인 시각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금은 폐기되고 청소년보호법으로 대체되었지만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시각으로 인식의 고착화를 이룬 미성년자 보호법을 통해서 여전히 청소년들

은 미성년자이자 보호받아야 하며 문제를 일으키면 당연히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논리를 강조하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적 약자이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경제적 자립을 해서는 안되거나 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되어져 왔다. 그래서인지 90년대 들어 대부분의 청소년지원에 대한 시각은 권리, 인권, 존중, 보호, 자립 등과 같은 이전의 사회적 격리차원의 관점과 다른 색다른 시각이 자리를 잡게 된다.

무엇보다 중시된 청소년기본법³⁾의 의미는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등 자율권에 대한 특이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법과의 다른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당시의 청소년기본법의 의미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특히 학생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여러 논의가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고 이에 대한 상당한 성과가 있으면서 권리와 참여 등의 청소년중심 사고에 대한 인식개선의 결과를 얻었던 점에 유념해 볼 여지는 있다.

이는 아마도 1980년대 일부 불어왔던 학생의 교복자율화라는 분위기와 엮여 일제잔재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학생들이 요구했던 학교에서의 억압적 분위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거대 사회적 압력에 묻혀 결국 청소년과 기성세대, 청소년과 청소년간, 학부모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상당한 갈등으로 증폭된 문제에서 수면아래로 모습을 감추었던 것이다. 이후로도 학생들은 끊임없이 교복 및 두발자율화를 부르짖었고 교복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로 1991년에는 상당수의 학교가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상징하는 교복을 준용하는 모습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한편 두발자율화 등은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학생의 인권이 중시되는 만큼 교사의 인권에 대한 대항적 의미로 주장되면서 오히려 기득권의 포기과 유지라는 상당한 진통으로 받아들여졌던 점은 매우 아쉽기도 한 부분이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의 갈등구조에는 여전히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수행중심에 청소년을 억압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그 결과는 학업이수를 통한 재능계발에 성공하게 될 경우 자신이 기여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자임하는 유능한 교사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⁴⁾.

3)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최초 제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여가와 문화적 삶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게 된 청소년시설과 지도자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매우 특이한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하지만 초기의 청소년기본법은 명실상부한 기본법의 의미라기 보다는 실행을 위한 행정적 의미가 강한 성격을 지닌 특징이 있고 기본법으로서의 의미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크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루어져 2004년 개정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청소년기본법은 2004년 이후 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된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의미와 사회적 기여 그리고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등을 함께 고려해 보았다.

4) 2019년 2월 말에 교직을 떠나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6천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주된 이유가 교권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꼽고 있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315129700797>). 이러한 인식에는 그동안 학생인권만을 중시한 결과 교권은 하락할 대로 하락하여 교사의 권위가 서지 않는 점을 들고

결과적으로 인권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서로의 권리에 대한 대항적 가치가 중시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청소년 또는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가 추구해야 할 당연한 의미에 더하여서 개인의 권리를 다소 억압해도 된다는 일방주의적 사고가 강한 현실적 의미의 탈출로를 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2010년 10월에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었고 이후 2012년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면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수렴과 지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의 권리와 이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확장은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의 흐름과도 무관하지는 않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오래된 역사적 흐름은 1924년 제네바선언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우리의 사회적 현실은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1993년도에 세계청소년의 해가 제정되고 청소년의 참여와 사회적 기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강조되면서 점차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정책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었다. 무엇보다 중시된 점은 청소년의 참여와 역량증진을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청소년을 점차 모든 사회적 주체로 여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었다.

특히 UN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국가가 명시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했는데 국제인권규약은 <표1>에서와 같이 양대 인권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의한 국제규약과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나누어져 있다(오병선 외, 2011).

<표 1>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인권목록 분류

주분류	하위분류	내용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	신체보존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권, 보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노예제도 및 매매금지, 법적 인격체로서의 인정, 고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국적 보호 및 국적 변동에 대한 권리 등	제 1~6조, 15조
	법집행에 대한 권리	정당한 법절차와 법심리에 대한 권리로서 법앞의 평등권, 인신보호권, 자의적 체포와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지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법률소급적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제 7~11조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교사는 권위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 권위가 없는 교사는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문제점으로 보아 여전히 교사는 학생지도에 대한 관점이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교권침해건수가 급증하였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해 교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주분류	하위분류	내용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자유권	삶의 특정 부분을 국가나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권리	제 18~20조
	정치적 권리	정치사회 구성원들의 국가업무에 대한 참여와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적 자유권에 속하는 언론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여러 정치적 결정과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권리	제 19~21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최소필요충족권	생존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 의식주에 대한 권리와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제 25조
	경제적 권리	본원적 생명활동의 하나인 노동행위에 대한 자유와 공정한 노동조건 및 보수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에 대한 권리, 여가와 휴식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권 등	제 22~24조
	사회적 권리	사회구성원들의 가정 및 사생활에 대한 보호, 가정을 형성할 자유에 대한 보호, 부당한 차별로부터의 보호, 자아발전의 보장 등을 위한 것으로 동등한 대우에 관한 권리, 사생활보호권, 가족형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제 2, 12, 16, 26조
	문화적 권리	사회구성원들의 정신적 자아실현과 문화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문화공동체에 참여할 권리, 문화활동과 그 결과를 보호받을 권리	제 27조

자료 : 세계인권선언문(1948년 12월 10 유엔총회).

사실 세계인권선언의 논의는 2차세계대전의 엄청난 충격을 통해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나 인간존엄성의 근본적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 점이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인류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나타내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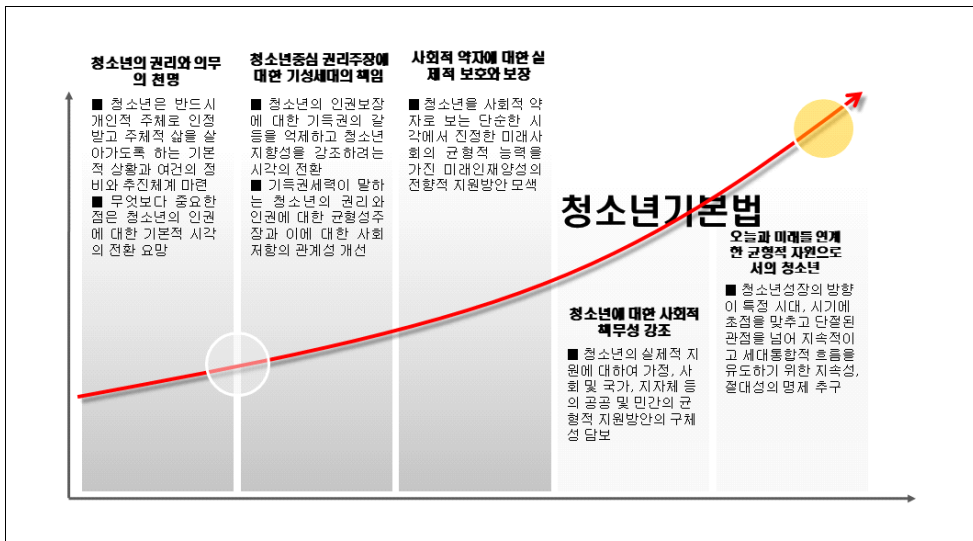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역사성을 많은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새롭게 조망해 보고 각 분야에서 약자로 규정되어버린 대상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여 긍정적 지지와 지원을 위한 획기적 변화의 기점을 만들 수 있는 논리적 대응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제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초창기의 청소년기본법은 말 그대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등을 보장하되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함께 논의하는 말 그대로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추종하여 대안을 만들고 해결하려는 시도가 수용되었다.

아마도 이러한 시각에서는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청소년정책의 변화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다. 즉 청소년정책에서도 미래의 청소년이라는 화두가 점차 오늘 그리고 지금의 삶을 운택하고 즐거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이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2010년부터는 청소년의 역량개발이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시되면서 자립이나 주체적 생활을 하도록 하는 부문에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량은 곧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열린 능력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고 동시에 이들의 지원이 확산적으로 전환되어져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은 [그림4]와 같은 사회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할 수 있다.



[그림 4] 청소년기본법제정의 사회적 의의

첫째, 청소년기본법의 핵심적 의미는 청소년의 권리와 의미 그리고 이를 지향하기 위한 참여의 적극성을 조장하고자 함에 있다. 사실 청소년의 참여나 권리의 표방은 매우 일상화된 논의였고 통상적으로 언급되어지는 청소년정책, 청소년중심의 지원에 대한 단골 소재였다. 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청소년정책은 여타 정책에서 매우 낮은 우선순위로 존재감을 잃고 있었으며 동시에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떠 오를 때 잠깐씩 언급되는 정책관심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실 청소년을 위한 참여와 권리의 주도적 가치를 보장하는 관건은 바로 선거권의 보장, 참정권의 확장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

이 미루어지는 것을 보면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참여와 권리보장의 이양이라는 점은 얼마나 요원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둘째, 청소년들의 참여보장을 위한 기성세대의 중대한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사실 청소년들의 참여는 권리에 대한 이해를 이루게 하는 기성세대의 나눔과 협력적 배려가 전제 되어져야 한다. 기성세대는 권력과 금력을 가진 전지적 존재로서 청소년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대상들이다. 권력과 금력을 가진 이들은 미성년자들을 매우 손쉽게 다루거나 의도한 목적대로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 결국 청소년들을 자신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협력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권한을 나누고 함께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리적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 개인이 가진 권력을 약자에게 베풀고 나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번 자신의 권력을 경험한 이들이 타인에게 주었을 때 돌아오는 박탈감이 크다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장기간 권력을 유지하려는 행위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노력을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권력나눔과 배려의 동반자적 관계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사회에서는 성인이라는 존재가 민관공을 막론하고 중요한 권력 행사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권력의 균형성을 함께하는 시도가 중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피해를 너무도 많이 경험하고 있다⁵⁾.

셋째, 청소년기본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함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심리적 박탈감이 너무도 큼을 증명하고 말해 주어야 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중요한 기제였음을 알게 된다. 사실 청소년들은 학생이어야 하고 학생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권리의 유예, 생활의 척박성, 삶의 제약 등은 너무도 많으면서도 당연시되는 등 문제의 일반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대상이었다. 당연히 주체성이라는 말은 언어적 수식에 불과하였고 주체적 사고나 행동을 표방하는 청소년들은 집단내에서의 이단아, 사회적으로는 문제아, 일반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없는 문제를 지닌 지진아 등과 같은 극단적 용어로 포장된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아무도 이들의 내면적 문제를 들여다 보거나 생각의 범주로 이끌어내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또 금기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은 힘든 생활의 여정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소극적 방관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넷째, 지금까지의 사회적 인식부재가 갖는 점을 개선하려는 구체적 행위는 가정, 사회,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구체적 대응을 주문하려 했던 부분

5) 아마도 기성세대가 갖는 권력의 함축성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해야 했던 사례는 미성년자나 아동의 삶에 너무도 큰 해악으로 다가왔음을 알고 있다. 아동의 노동착취, 미성년자 성매매 등과 같은 유해환경의 악영향으로부터 탈피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성인의 청소년 악용이 아닌 긍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너무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을 들 수 있다. 아마도 청소년기본법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일부의 청소년지원(대부분 청소년 보호나 격리적 관점의 문제인식이었지만)을 넘어 포괄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의 구체성을 담보하려는 의지의 표현이 내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의 확장성으로 이해되어진다. 즉 청소년기본법 이전에는 사실상 청소년을 입법의 대상으로 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자원으로 파악한다는 점은 여러 법적 관점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 사회적 격리나 문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을 넘나들지 못해야 하며 이들 공간에서 주어진 방향에 따라 체계적 성과를 얻는 것이 성인들이 바라보는 청소년관점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조류의 변화,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부정적 한계와 탈피 등을 조망하게 되는 자구적 노력 등이 겹쳐지면서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인식적 변화가 수반되었다. 아마도 지난 80년대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사회적 흐름에서 청소년기본법의 수용이라는 의미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수십년동안의 우리 경제적 한계는 주변과 타인을 돌아볼 여유가 크지 않았고 앞만보는 지향적 차원에서 모든 에너지가 집약되었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가져온 상대적 여유의 증대는 주변사람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기회도 생성되었는 바 청소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관점도 변화되었음을 지적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동시에 해당 법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시행착오는 진정한 청소년의 지원과 지도의 방향성에서 기성세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의 자성의 판단도 한 몫을 하게 되었다. 즉 청소년이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는 데 전제는 동의하면서 함축적인 의미로 미래의 청소년육성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청소년기본법의 내재된 의미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행과정에서의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청소년인식격차가 너무 거 투자가 유보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청소년의 현재적 삶을 조망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어쨌든 중요한 청소년기본법의 의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지금의 삶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활용가능한 방법을 찾아 종국적으로 성인기에 이르러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권리를 토해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는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본법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 왔다. 아마도 기성세대가 주장하는 청소년들의 관점이 확고한 학교교육중심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할 수 밖에 없는 기본적 사고가 확고하게 뿌리박혀 있던 사람들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주었던 토대가 되었다.

만약 청소년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청소년을 위한 공적 서비스의 확장을 육성과 보호, 복지 등이 균형을 이루어 추진되었다라기 보다는 특정 영역 예를 들면 청소년복지와 보

호와 같은 가시적 성과를 얻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만이 설자리를 잡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청소년기본법은 어떠한 청소년정책을 펴는 것이 청소년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균형되며 오늘과 미래를 스스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다수를 지지하고 동시에 소수의 삶에서 숨막혀하는 이들을 지원하고 협력을 이루는 공간과 지원을 틀을 균형있게 이루도록 하는 기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청소년기본법이 헌법의 의미를 준용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제시해 본다면 청소년을 위한 이념적 접근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헌법에서 명시하는 인간존중과 참여, 자유, 행복한 삶 등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상당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청소년에게는 근본적으로 적용되지 못할 우려가 큰 대상들이다. 아무리 좋은 구호나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조건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이미 수십년동안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성, 학교를 벗어난 이들을 바라보는 불편한 문제, 성적 혼란에 신음하는 이들의 사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한성, 심과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간적 배려 등은 청소년들의 삶을 옹죄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이를 개선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고통과 고민에 대한 대안적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만큼은 헌법적 의미가 수용되기 어려웠던 문제가 컸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제기된 청소년기본법은 아마도 이러한 청소년의 제기된 문제를 일소에 제거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주변인의 생성과 지원, 또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참여와 권리의 필요성 등을 깨닫게 해 주는 말 그대로 청소년중심, 청소년의 변화수반 등을 목표로 하는 핵심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기본법이 추구하는 맥락적 흐름은 점차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를 고양시키고 스스로 주체적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방향성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억제하는 어떠한 규제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성인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스스로도 학습효과로 인한 주체적 삶의 지향이 어렵다는 시각이 내재화되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여전히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억제하는 문제점은 상쇄되지 못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단계에서 청소년의 규제일변도의 가치를 바꾸어낸 점은 청소년기본법이 가진 상당한 사회변혁적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기본법의 정비에 대한 사적 고찰(2004년 개정 이후)

1) 청소년기본법 개정발의사항

하나의 법이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온전한 법체계를 구현해가기가 어려운 점은 항상 사회변화나 변동의 폭이 커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당시에는 최적의 법적 의미를 구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변화하고 이전과 다른 다양한 환경적 특성이 법의 실제 수용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를 법의 내용에서는 적극 반영을 해야 한다. 따라서 법의 정비를 위해 제시된 각종 실제적 과정이나 입법 내용을 보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적절히 파악해낼 수 있다.

또한 입법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입법의 주체가 누구이며 어느 곳이나에 따라서 그리고 입법의 내용이 가결되거나 폐기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개정과정이 많다고 하는 것이 법이 올바르게나 미흡하다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본법은 2004년 전면개정되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체계의 3법체제로 나뉘어진 이후 2019년 7월 현재까지 총 57건의 일부개정안이 접수되었고 일부는 개정되어 입법화되기도 하였으나 상당수의 입법안은 폐기되거나 또는 철회되는 등 입법화되지 못한 내용도 많이 있다.

물론 이러한 입법화과정을 거쳐 청소년기본법이 구체화되고 동시에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의미를 통한 참여적 의미를 잘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의 법률안은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취지와 적합하지 않는 내용도 상당수 존재한다.

2004년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이후 입법화과정을 거치면서 상정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2>에서와 같다.

<표 2> 2004년 이후 청소년기본법 입법화내용(57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심사진행상태
202144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의원	2019-07-11			회부
202034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	2019-05-10			소관위접수
201883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의원	2019-02-26			소관위접수
201876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의원	2019-02-22			소관위접수
201576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1인)	의원	2018-09-27	2018-11-29	수정가결	공포
201457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	2018-07-26			소관위접수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심사진행상태
201410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의원 등 10인)	의원	2018-06-29			소관위접수
201125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8-01-03	2018-03-30	원안가결	공포
200953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의원 등 10인)	의원	2017-09-21			소관위접수
200865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의원	2017-08-23			소관위접수
200848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의원 등 10인)	의원	2017-08-11			소관위접수
200618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6인)	의원	2017-03-15	2017-11-24	수정가결	공포
200071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의원 등 10인)	의원	2016-07-06			소관위접수
200032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7인)	의원	2016-06-17	2016-12-01	수정가결	공포
191852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16-02-02	2016-02-04	원안가결	
191726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의원	2015-10-19	2016-05-29	임기만료폐기	
191531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의원 등 10인)	의원	2015-05-28	2016-05-29	임기만료폐기	
191507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원	2015-05-08	2016-02-04	대안반영폐기	
191506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15-05-06	2015-05-29	원안가결	
191493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등 11인)	의원	2015-04-29	2016-02-04	대안반영폐기	
191469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평은의원 등 12인)	의원	2015-04-13	2016-02-04	대안반영폐기	
191441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3인)	의원	2015-03-24	2015-05-29	대안반영폐기	
191403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의원 등 13인)	의원	2015-02-24	2015-05-29	대안반영폐기	
191347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의원 등 10인)	의원	2014-12-31	2015-05-29	대안반영폐기	
191146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4-08-25	2015-01-12	수정가결	
1909528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14-02-27	2014-02-28	원안가결	
1908793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희의원 등 10인)	의원	2013-12-26	2016-05-29	임기만료폐기	
1907668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영희의원 등 10인)	의원	2013-11-08	2014-03-26	폐기	
1906967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의원	2013-09-25	2014-02-28	대안반영폐기	
1906638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3-09-02	2014-02-28	대안반영폐기	
1904228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3인)	의원	2013-03-22	2016-05-29	임기만료폐기	
190331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의원 등 10인)	의원	2013-01-14	2016-05-29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심사진행상태
190282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의원	2012-11-27	2016-05-29	임기만료폐기	
1902775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의원	2012-11-23	2013-04-30	수정가결	
1814453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11-12-30	2011-12-30	원안가결	
1813202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호의원등 10인)	의원	2011-09-14	2011-12-30	대안반영폐기	
181180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등 10인)	의원	2011-05-17	2012-01-06	폐기	
181168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11-04-29	2011-04-29	원안가결	
181117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혁의원등 10인)	의원	2011-03-15	2011-06-03	폐기	
1810937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등 12인)	의원	2011-02-25	2011-06-03	폐기	
1810297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등 14인)	의원	2010-12-10	2011-06-03	폐기	
1810237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등 13인)	의원	2010-12-09	2011-12-30	대안반영폐기	
181021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남의원등 10인)	의원	2010-12-08	2011-04-29	대안반영폐기	
181016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등 13인)	의원	2010-12-07	2011-06-03	폐기	
1810133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등 12인)	의원	2010-12-03	2011-12-30	대안반영폐기	
1808292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10-04-28	2010-04-28	원안가결	
180809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금래의원등 10인)	의원	2010-04-06	2010-04-28	대안반영폐기	
1803036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2008-12-12	2011-06-03	폐기	
1802695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률의원등 18인)	의원	2008-11-28	2010-04-28	대안반영폐기	
1801401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외 171인)	의원	2008-10-08	2008-11-28	철회	
1800356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등 10인)	의원	2008-07-21	2011-04-29	대안반영폐기	
180009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등 19인)	의원	2008-06-27	2011-06-03	폐기	
177506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7-09-28	2008-05-29	임기만료폐기	
172582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근식의원등 21인)	의원	2005-09-07	2005-12-08	수정가결	
172402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근식의원등 21인)	의원	2005-08-16	2005-09-07	철회	
171707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등 15인)	의원	2005-04-26	2008-05-29	임기만료폐기	
17134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5-02-04	2005-03-02	수정가결	

자료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2019. 7. 11일 인출

2)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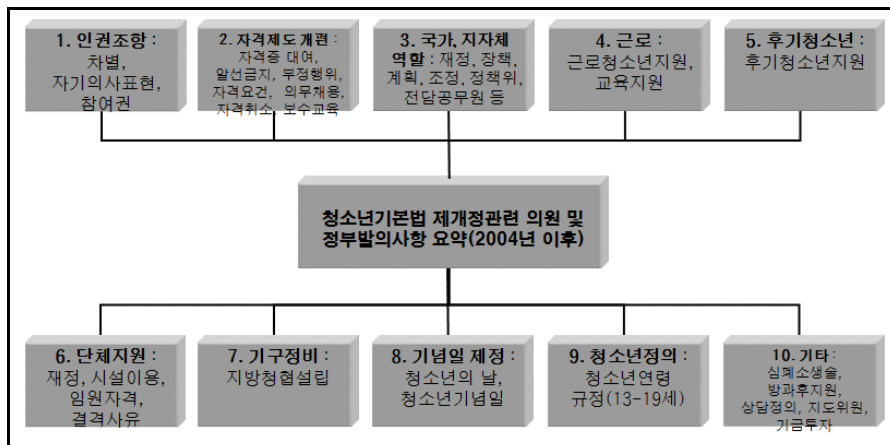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은 2004년 이후 일대 전환기를 맞는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구분되어 명실공히 기본법적 우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말그대로 청소년기본법적 의미발현을 위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서 법체계의 보완을 위한 각종 지원과 협력요인이 많아지면서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에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된다.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은 [그림]에서와 같이 대략적인 범주화를 통해서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10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실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정에서 어떤 내용은 해당 법체계의 의미와 잘 결부되어서 실제로 타당한 점도 있지만 다른 경우는 실행법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부분도 적지 않아서 기본법의 취지나 의미미해가 되지 않는 상황도 다소 연출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관련 의원입법의 경우 상당부분은 청소년기본법의 설립취지나 기본이념을 토대로 제시되고 있기는 하다. 즉 청소년지도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개정,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문제점 개선, 청소년정책수립을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필요성, 근로청소년의 근로실태와 교육지원, 후기청소년의 지원방안 제시 등은 말 그대로 청소년기본법상에서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마련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 요소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 설립 취지와 매우 적절한 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의 적용보다는 활동진흥법의 구성내용에 더욱 타당한 법적 조항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아마도 청소년기본법의 설립 취지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해당 법적 의미를 강조하려는 경향만을 제시하려는 점에서 이는 아마도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해서 실행법에 제시될 내용을 기본법상에 포괄적으로 제시하려는 경향도 존재한다.



[그림 5] 청소년기본법 개정발의내용의 범주 요약

[그림5]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기본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청소년 이기에 사회적 약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대우를 인정받고 동시에 모든 대상과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갖추도록 해 주어야 하지만 그러한 내용보다는 제도화된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언급된다.

III.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청소년기본법의 전개필요와 방향성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중요한 방향성을 의미하지만 실제적 구성요소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눈에 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청소년정책의 의미에 대한 규정이다. 김정률(2019:3)은 청소년기본법의 순환적 오류를 제기하면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육성정책의 용어와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거나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즉 청소년기본법 제4조를 통해서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육성에 우선하는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 청소년정책(제 1조)과 청소년육성(제4조)간의 의미불일치를 일체화하는 점에서 다소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둘째, 청소년기본법 자체의 의미수용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목적(제1조)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가정, 사회, 국가 및 자자체의 청소년책임을 규장하고 이를 청소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의 목적 자체가 갖는 의미와 용어의 맥락적 부정합성이 눈에 띈다.

셋째,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제2조)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의미를 보면 규정의 추상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표방하고 있지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제시하였을 때가 정당한 것인지의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는 그 자체적으로 오히려 청소년의 부당대우, 적절한 권익부여 등의 차원에서 이미 차별이 존재함을 의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기본법의 지향점과 미래의 상황을 고려한 유기적 연계가능한 차원에서 청소년중심의 정책을 펴도록 하는 올바른 청소년기본법이 되기 위한 몇가지 제언을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기본법 개정의 방향성

청소년기본법의 제정목적과 함께 현재 적절한 이념추구가 타당한지는 분명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야 한다.

사실 청소년기본법은 제정 초기에는 지금의 청소년에 대한 분명한 가치지향성을 가지고 출발하였다고 보다는 당시의 환경적 요인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조건과 함께 시대적 여건에서 갖추었던 제반 물리적, 비물리적 환경의 타당성이 다소 강하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제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에 청소년을 위한 여가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기회조차도 없었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었다.

지금도 당시와 큰 차이는 없지만 청소년은 곧 학생이었고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적 범주에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해야 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였던 이들에게 인권적 측면의 접근이라기 보다는 곧 생활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접근을 제공해 주자는 차원이 매우 강조되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청소년기본법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인권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적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대 전제를 실현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2004년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이라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맥락을 얻게 된다.

이전의 청소년기본법은 기본법의 의미를 구현하는 진정한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청소년의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해 내기 위한 제반 조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주변인적 요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였던 바 실체는 실행법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강하였기 때문에 본질적 의미의 기본법이라는 기준은 다소 모호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본법은 실행법이든 아님 기본법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든 간에 말 그대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의 보완을 위한 차원의 출발을 강조하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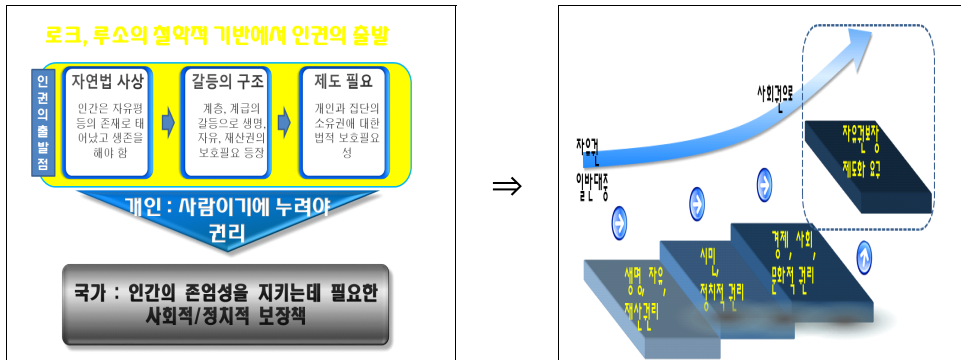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의 청소년기본법 자체에는 청소년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하는 기준의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의 온전한 역할을 명시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청소년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을 위한 몇가지 대 원칙과 전제의 출발점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① 청소년기본법의 지향점으로서 청소년인권

청소년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중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철학에서 출발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동안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무지나 무관심의 발로로 청소년들의 삶이 자기주도적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많이 배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림6]에서와 같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서부터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수용해 나가는 출발점인식이 필요하다.



[그림 6] 인권의 출발점인식

오늘의 인권보장에 대한 개념은 1776년 미국 버지니아 인권선언과 1789년 프랑스혁명을 시발점을 볼 수 있다. 이전에는 인간의 권리나 시민으로서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였거나 대부분 왕권에 따른 인간의 존재는 계급적 구조속에서 제한된 권리를 최소한으로 누리던 존재였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자연법적 사상을 실정법에서 보장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절대왕정에 대한 불만의식은 시민의식의 배양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으며 개인, 생명, 자유, 재산 등 자신의 권리와 함께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 등이 발생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시도가 인권과 법의 상호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림6]에서와 같이 인권이 점차 개인적인 측면의 자유권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발전되는 이유로는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대한 문제점이 극대화되면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인권이라는 것은 자연상태가 아니라 사회안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이기에 근본적으로는 국가이전에 천부적으로 누구나가 누려야 할 기본적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초실정법적인 효력을 갖춘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의 경우는 천부적 권리를 누구나 타고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가 강조되면서 생존권적 자유권은 점차 제약되는 경향이 커지게 되었는데 이를 조정하는 어떠한 강제적 수단이 필요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기본법체계속에서 담보해내려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기본법은 통상 개괄적인 법률사항에 속하거나 법형식으로서의 체계성을 보리고 정책의 표현으로서의 체계성에 비중을 두어 구성되므로 정부에 고유의 행정입법사항도 기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적지 않다. 또한 기본법은 국민적 합의를 의제적으로 구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문제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그러나 정책으로서의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는 기본법의 기능을 ① 국가정책의 방향제시와 추진, ②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 종합화, ③ 행정의 통제기능, ④ 정책의 계속성, 일관성 확보, ⑤ 국민에 대한 전달기능, ⑥ 지방분권의 추진기능 등 크게 6가지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기본법의 의미를 인권과 결부시켜 구성하고 적절한 의미파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기] 기본법의 의미와 청소년기본법의 방향성 관계

[그림기]에서와 같은 의미를 토대로 청소년기본법이 지향해야 할 의미를 보면 6가지 관점에

서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의 대안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중점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가정책의 방향제시와 추진의 관점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생존권에서부터 사회권에 이르기까지의 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의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즉 목적이나 비전을 통해서 이러한 방향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동시에 이를 지향하는 정책과 제도적 의미를 제대로 발현하고 있는지를 설명해내는지를 분석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사회적 약자라면 얼마나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를 받아들이고 언급되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내어야 한다.

둘째,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 종합화의 관점이다.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라는 대 전제는 곧 사회적 약자이기에 제도와 정책적인 보호와 보장이 뒤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기본법의 중심 내용과 주 영역에서 청소년의 기본권과 권리 및 참여에 대한 능동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재점검 해 주어야 한다.

셋째, 행정의 통제기능에 대한 접근이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들의 인권과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해서 국가 법률과 행정지원 체계속에서 얼마나 균형적 자세와 지원을 이루고 있는지의 검토가 이행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의 계속성, 일관성 확보차원이다. 하나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시류에 따라서 추진되었다가 일정기간이 흐르면 없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서 꾸준히 정책지원을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 보장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의 점검을 해내는 시도가 필수적이다. 그것이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책과 시책이 여러 부처에서 연결되어 있다면 각각의 부처에서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인권보호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협력과 통제적 기능을 수반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에 대한 전달기능의 추진이다. 청소년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만 정책 홍보나 가치의 제공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자가 되어 있다는 점은 청소년을 둘러싼 집단적 환경에서 다수가 권력의 분점과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청소년에게 권리의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자기 성장의 이해가 필요하고 동시에 부모, 교사, 지도자 또는 일반 시민에게는 청소년들의 권리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고의 전환, 인식의 개선, 지원의 배가 등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의 관점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지방분권의 추진기능이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곧 중요한 지원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가의 필요성이다. 청소년들은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표가 되지 않는다는 단편적 시각으로 청소년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접근이 매우 취약하다. 곧 이러한 점 때문에 국가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권리와 인권의 옹호를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할 경우 법과 제도를 통한 강제적 압력은 물론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협력방안 또한 동시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6가지의 관점에서 현재의 청소년기본법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가를 분석해보고 부족할 경우 보완해 보는 작업을 행하도록 하였다.

2. 청소년기본법 조항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의미와 개정(안)(법률안개정 및 방향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제1조(목적) 이 법은 <u>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	제1조(목적) <u>이 법은 청소년이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실천행위를 청소년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본적으로 달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u>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u>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전문개정 2014. 3. 24.]	● 기본 이념의 철학은 기본법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의미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하며 동시에 기본법 전체의 구성과 내용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명료하면서도 방향을 잘 담을 수 있어야 함 제2조(기본이념) ① <u>이 법은 청소년 스스로가 현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받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국가와 사회가 제공해야 함은 물론 청소년에 유해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u>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u>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의 보장(가정, 학교, 사회적 기능 필요)</u> 2. <u>청소년의 자율적 참여기회 확대(청소년문화, 여가 등 기본 활동과 체험활동 등의 기회 증대, 그리고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와 의사표현</u>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u>의 여건 증대 등)</u> <u>3.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의 조성(유익환경확대 및 유해환경 감소노력)</u> <u>4.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지원(국제적 감각, 민주시민으로서 국내와 교류, 역량 강화 등)</u>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u>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u> 2. "<u>청소년육성</u>"이란 <u>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u>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u>청소년활동</u>"이란 청소년의 <u>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u> 4. "<u>청소년복지</u>"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u>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열어 두기는 하지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의 적용에 대해 청소년의 권리를 규제를 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u> 현재의 법은 기본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단지 행위적 접근과 그 행위를 위한 수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개념규정에 앞서서 청소년인권에 대한 기본적 개념규정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만 다른 법률에서 <u>청소년을 적용할 때 청소년의 행위를 규제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u>로 전환. 2. "<u>청소년의 기본 인권</u>"이란 <u>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u>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u>청소년육성</u>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u>청소년육성</u>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u>하여 청소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간다움의 최소한 권리 기준이 보장되도록 해야 함을 말한다.</u>(최소한의 권리기준에는 차별금지, 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보장, 교육권, 근로권, 복지권, 문화여가생활권 등이 포함되어져야 함) 2-1. 청소년<u>건전</u>육성이란 <u>청소년이 자기계발의 주도성과 사회적 관계의 건강성을 유지하여 균형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보호와 복지의 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생활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교육과 긴밀한 협력을 함으로써</u> 3.<u>균형성장에 필요한 필수 역량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주는 실내외 체험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에 의해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여러 형태로 구조화된</u> 활동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u>건전</u>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u>으로써 가, 나 항의 청소년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u> ● 현재처럼 청소년지도자를 가, 나 의 경우는 국가자격에 의한 일정 자격을 취득한 범주의 사람으로 규정한 반면, 다의 경우는 일반인으로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서 청소년분야의 단체나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다소의 어려움은 있더라도 청소년시설, 단체 등에 종사하지만 청소년전문지도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건강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① 이 법은 <u>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에</u>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을 <u>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려는</u>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	● 추가사항 <u>⑥ 청소년이 인간다운 삶과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한 문화, 여가활동의 기회보장이 마련되어야 한다.</u> <u>⑦ 청소년은 자신의 생활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u> <u>⑧ 청소년은 학교와 학교 이외에서도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u> <u>⑨ 청소년은 경제적 필요에 의한 근로를 할 때 노동인권을 보장받을</u>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u>권리를 가진다.</u>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u>청소년 관련 정책</u>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 청소년의 자치권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 특히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려는 인식이 매우 낮고 또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자치권은 청소년스스로가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더욱 강조해야 함. 동시에 청소년의 자치권은 기성세대의 경우 상대적 개념으로 보고 억압이 통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대간 갈등의 근원으로 이해하려는 점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인으로 청소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틀이 더욱 정교화되어야 함 <u>①-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활동과 참여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u> <u>①-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대상의 특성과 환경, 상황에 관계 없이 모두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교육을 위해 힘쓰도록 해야 한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3. 24.]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에 영향력이 큰 관련분야 및 부처 전반의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④(현행과 같음)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한다. ⑥(현행과 같음)
제6조(가정의 책임) ①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제6조(가정의 책임과 부모의 역할) ① 가정은 청소년건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으므로 부모는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이 잠재역량과 자질을 발현하여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건전한 청소년교육프로그램이나 각종 활동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모는 가정에서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고 게임, 인터넷 과몰입을 예방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4. 3. 24.]	④ <u>부모는</u> 자녀양육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u>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u> ④-1. <u>가정이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의 보장이 어려워</u>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제7조(사회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u>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u>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u>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u>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7조(사회의 책임) ① <u>건강한 인격체로서 자기주장과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이루어 건강한 인권의 주체로 성장하도록</u> ② <u>청소년이 미성숙하고 발달과정에 있다는 점을 깨달아 건전한 사고와 잠재역량을 계발하여 균형성장에 이르도록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비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u>.....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에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범적 행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청소년육</u>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u>청소년의</u>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u>성에 필요한</u>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u>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u>인권과 권리증진에 필요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u> ② <u>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고용주로부터의 인권침해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u> ③ <u>에서 부모의 역할</u>..... ④(현행과 같음)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u>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본조신설 2012. 2. 1.]	● 교육과 홍보에서 갑자기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들고 나온 명확한 이유가 이념이나 세부 내용과 연계가 되지 않음. 오히려 목적과 기본이념을 권리와 인권의 의미와 연계한 후 이를 홍보하는 방안이 더 타당함 ① <u>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u> ①-1.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중에서도 특별히 사회적 약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이 권리를 얻고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에 힘써야 한다.</u> ②~③(현행과 동일)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제목개정 2016. 3. 2.]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개정 2014.3.24, 2015.2.3>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 [제목개정 2015. 2. 3.]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①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u>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부처의 정책 중 청소년정책과 긴밀한 연계가 있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지원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u>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u>진전</u>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u>⑤-1. 각 부처의 정책중 청소년에게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해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이 있을 경우 각 부처는 이의 의견을 반드시 따르고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u>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④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8.> 1. 기획재정부 차관 2. 교육부 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4. 통일부 차관 5. 법무부 차관 6. 행정안전부 차관 7.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9. 보건복지부 차관 10. 고용노동부 차관 11.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12.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13. 경찰청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5. 청소년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⑤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8.> ⑥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5. 2. 3.]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① 청소년진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③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의 구성에 반드시 일정 비율의 청소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u>③ 국가는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결과를 청소년특별회의에 반드시 알려 그 결과를 청소년이 이해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u>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4. 3. 24.]	●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수립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계획수립을 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항, 더 나아가서는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재정, 교육, 협력 등)부문이 전혀 없음. 따라서 현재에는 청소년기본법의 핵심인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말 그대로 형식적 조항에 그치고 있음. <u>③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건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 충실히 달성되도록 해야 하며 이전 기본계획의 성과가 미달하지 않도록 분명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u> <u>④ 청소년정책의 이행에 있어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연계된 경우 해당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성과를 얻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u>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2. 3.]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청소년정책에 무관심해도 아무런 규제조항이 없음. 지방자치제의 효과성을 추진하는 경우는 좋지만 청소년이라는 대상중심 정책을 표방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청소년정책에서는 발휘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필요함 <u>③-1.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한 청소년정책추진실적의 결과 및 성과에 대해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하도록 한다.</u>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6조(청소년의 달과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건강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② 청소년의 달 중 넷째주를 청소년주간으로 정하여 청소년건강육성의 사회적 관심 고조와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한다.
제3장 삭제 <2008.2.29>	
제16조의2 삭제 <2008. 2. 29.>	
제16조의3 삭제 <2008. 2. 29.>	
제16조의4 삭제 <2008. 2. 29.>	
제16조의5 삭제 <2008. 2. 29.>	
제16조의6 삭제 <2008. 2. 29.>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제16조의7 삭제 <2008. 2. 29.>	
제16조의8 삭제 <2008. 2. 29.>	
제4장 청소년시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u>②-1.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들의 인권과 권리증진을 위하여 시설의 목적에 맞는 교육,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u> <u>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u>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공공성·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현재의 청소년시설운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적격자 운영, 시설관리자의 임기보장 미흡, 시설의 지원부재(인력지원 등)와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음. 그럼에도 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중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이의 규정신설을 통한 책무성 강화가 매우 시급함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①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시설장 등 전문가의 임기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①-1.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에서 정한 청소년지도자 양성교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양성교육기준과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1. 제21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전문개정 2014. 3. 24.]	
제2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5. 2. 3., 2015. 6. 22.> [전문개정 2014. 3. 24.]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	④ 청소년시설 및 단체 등은 청소년지도자의 법적 배치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24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u>둘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u>두어야 한다.</u>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u>지도를</u> 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③ <u>지도와 지원을</u>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 청소년지도위원의 의미가 과거 청소년보호적 관점과 시각에서 이어져 온 피상적 의미가 매우 강함. 현재의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동장, 이장 등 행정단위의 공무원, 또는 지역의 일부 주민 등이 참여하는 맡그대로의 자원봉사단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는 지역수준의 청소년인권과 권리보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의 지원인력과 체계로서 매우 미흡함.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수준의 청소년건강교육성 전문집단의 참여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제27조(청소년인권전문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건강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인권전문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①-1. 청소년인권전문지도위원은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 청소년인권전문..... 임무, 역할 ● 청소년인권전문지도위원은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 강한 성장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써 교육을 받은 자격, 역할 등의 명확성을 재구성해야 함
제6장 청소년단체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①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2.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 ②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①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자기계발과 체험활동을 1-1.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증진을 위한 자기표현과 참여기회제공 2~3(현행과 같음)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②(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① 청소년단체의 임원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그 밖에 회칙으로 정한 임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1. 제21조제3항 각 호(제4호의2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2015. 6. 22.>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8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의 임원에게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③-1.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의 요구에 반하여 청소년단체활동을 배제해서는 안되며 청소년에게 다양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u>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u>
제30조(수익사업) ① 청소년단체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1조 삭제 <2010. 5. 17.>	
제32조 삭제 <2010. 5. 17.>	
제33조 삭제 <2010. 5. 17.>	
제34조 삭제 <2010. 5. 17.>	
제35조 삭제 <2010. 5. 17.>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제36조 삭제 <2010. 5. 17.>	
제37조 삭제 <2010. 5. 17.>	
제38조 삭제 <2010. 5. 17.>	
제39조 삭제 <2010. 5. 17.>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 증진 3. 청소년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활동 4.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5.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지원 6.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7. 청소년 관련 도서 출판 및 정보 지원 8.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 9.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 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⑦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⑧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제42조 삭제 <2012. 2. 1.>	
제42조의2 삭제 <2012. 2. 1.>	
제42조의3 삭제 <2012. 2. 1.>	
제42조의4 삭제 <2012. 2. 1.>	
제42조의5 삭제 <2012. 2. 1.>	
제43조 삭제 <2012. 2. 1.>	
제44조 삭제 <2012. 2. 1.>	
제45조 삭제 <2010. 5. 17.>	
제46조 삭제 <2012. 2. 1.>	
제46조의2 삭제 <2012. 2. 1.>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개정 2014.3.24>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u>①-1. 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을 방과후활동 지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요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u>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u>②-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 상담,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u>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0조 삭제 <2012. 2. 1.>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정보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등 청소년에 대한 기반과 정책적 지원의 관심이 낮은 곳에 청소년들의 여가, 생활, 문화 등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설립과 인력배치, 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2. 23.> 1. 정부의 출연금	<u>5.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법정전입금 중 특별교부금의 10/100을 청소년정책예산으로 전출한다.'</u> <u>6. 청소년보호관련 각종 별과금을 지방청소년정책지원을 위한 육성기</u>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3.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3. 24.]	<u>금으로 전환한다.</u> <u>7.</u>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5. 2. 3.>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5.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7. 청소년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8.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물품 등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 재산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 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 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9장 보칙	
제57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8조(조세 감면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 그 밖의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되거나 기부된 재산 2. 제54조에 따라 기금에 출연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③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실험·실습·시청각 기자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 2.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 시설·설비 [전문개정 2014. 3. 24.]	
제59조(감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시설 2.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3.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4. 그 밖의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②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제4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자격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2. 3.]	
제10장 벌칙	
제64조(벌칙) 제30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4조의2(벌칙)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방향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61조를 위반한 자 ②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참고문헌

- 김도균(2010). “인권의 개념과 원리”.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아카넷. 2010.
- 김성준(2009). 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사적 관점에서 헌법의 정의 시도. 세계헌법연구, 15.2.
- 김정률(2019). 국가청소년정책의 발전적 이해와 방향. 오늘의 청소년 No. 274.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박영도(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박영도(2009). 입법체계상 기본법의 본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 법조 12, Vol. 639. 272-314.
- 우기택(2015). 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영미(2016). 제·개정을 통한 청소년기본법 변화고찰. 법학연구 50.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03-125.
- 이준일(2014). 인권법(제5판). 홍문사.

미래지향적 「청소년활동 진흥법」 정비 방안

김 영 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래지향적 「청소년활동 진흥법」 정비 방안

김 영 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미래환경 변화와 청소년활동의 개념 변화

1. 청소년관련 환경 변화

청소년 관련 미래환경 변화란? 현재를 포함하여 앞으로 다가올 장래를 말하며 청소년의 생활, 고용과 일, 가족관계, 교육관계, 범죄와 처벌, 건강, 각종 서비스등과 더불어 국가적 측면에서 요구하는 청소년의 능력 등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변화를 포함한다.(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미래연구회 옮김, 2006, p.173)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실제적인 외적환경 변화는 두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사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각종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1 총인구 및 청소년인구 추계(2010~2065)

(단위: 명)

연 도	총 인 구	인 구 성장률	청소년인구			
			전체	남성	여성	구성비
2010	49,554,112	0.50	10,370,213	5,468,113	4,902,100	20.9
2015	51,014,947	0.53	9,653,802	5,080,852	4,572,950	18.9

연 도	총 인 구	인 구 성 장 륜	청소년인구			
			전체	남성	여성	구성비
2040	52,197,882	-0.32	6,499,389	3,336,669	3,162,720	12.5
2045	51,051,159	-0.52	6,331,801	3,251,241	3,080,560	12.4
2050	49,432,752	-0.72	5,963,258	3,062,603	2,900,655	12.1
2055	47,429,589	-0.89	5,461,270	2,804,982	2,656,288	11.5
2060	45,245,985	-0.97	5,013,453	2,574,845	2,438,608	11.1
2065	43,024,097	-1.03	4,727,919	2,428,205	2,299,714	11.0

* 출처: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이유진,김영한), p.2 재인용

위의 표와 같이 청소년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청소년 인구 수의 감소와 더불어 총인구 중에서 청소년인구 구성비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유진·김영한, 2017)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각종 제도적 장치가 양적이고 집단적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질적이고 개별적이고 섬세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교육환경의 변화이다.

이는 교육대상 범위의 지속적 확대와 더불어 교육내용의 확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중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학진학률도 67%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사회적 관심은 청소년보다 아래 연령대를 대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교육 서비스의 질적 확대가 강력히 요청되고 있으며, 위로는 대학원,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식적으로는 산업사회지식에서 정보화사회 지식을 포함하여 새로운 환경인 4차 산업에 대한 지식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교육 형태와 과정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교육과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청소년이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새로운 교육형태와 과정의 등장은 또 다른 사회적 환경인 빈곤 등의 영향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p.2)

이러한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청소년체험활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학교현장에서의 변화로는 최근의 청소년인성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제도적 장치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인성교육은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많은 관심만큼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인간교육, 시민교육, 도덕교육, 가치관 교육, 기본습관교육 등의 의미로 정의되기 때문이다(곽병선·유병열·윤현진, 1997:6-7; 유

병열, 2006:2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과 인성교육은 여전히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구성되어가는 동시에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되어가는 진행 중인 준거(working criteria)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04호로 제정되어 동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¹⁾으로 구체화 되었다. 동법 제2조는 인성교육 및 관련 핵심 용어들을 다음과 같은 법률적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한 인성교육법을 추진하기 위한 인성교육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일정부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계획은 인성교육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그 추진 방법을 비전-미션-아젠다의 세 단계로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첫째,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가치의 회고 또는 소급(retrospect)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근거가 되는 가치를 과거에서 찾고자 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에 필요한 인성교육의 가치를 전통으로부터 찾아내어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는 '성공적 미래 사회의 구현을 위한 기반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가치의 전망(prospect)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인성교육의 가치를 미래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교육의 가치를 찾아내어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현재의 지식기반사회에서 또한 다른 미래사회로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의 창조를 인성교육에 기반을 두고 탐색하고자 하고 있다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의 기본적인 목표는 다음 세대의 교육에 효과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학교와 교육체계가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화와 노력을 미래인재의 양성에서 탐색하고자 함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교육은 자기관리 능력, 바람직한 대인관계 능력, 고차적 인지 능력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형성되는 미래인재의 양성라고 할 것이다.

2. 청소년활동관련 제도적 환경 변화

1991년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은 2004년에 청소년관련 3법으로 제·개정되어,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규정하고,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규정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보완·제정함으로써 청소년관련법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어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정효진, 2010). 특히 청소년활동진흥법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비롯한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진흥법의 2004년 2.9일 제정이후 지금까지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관련 26건을제외하고 13년간 10차례의 소규모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개정의 주된 사유로는 청소년수련활동 사고와 관련된 안전부분개정으로 이동형 및 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신고의무와 의무인증제도의 도입, 종합안전 및 위생점검등이 이루어져 왔다. 이 결과 현재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활동보장,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4장 청소년활동의 지원,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지원,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구성체계 〉

장	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장	조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6조의3 임원
	제6조의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의5 자료의 요청 등
	제6조의6 보조금 등
	제6조의7 「민법」의 준용
	제6조의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의9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제8조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제9조 학교와의 협력 등
	제9조의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9조의3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제9조의4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제9조의5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제9조의6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제9조의7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2조 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제13조 수련시설의 등록
	제14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15조 결격사유
	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6조의2 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제17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제18조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8조의2 안전교육
	제18조의3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제18조의4 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9조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제19조의2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제20조 시정명령
	제20조의2 운영 중지 명령
	제21조 금지행위
	제22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3조 청문
	제24조 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25조 보험 가입
	제26조 수련시설의 승계
	제27조 수련시설운영의 휴지·폐지 등
	제28조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제29조 삭제 <2016.5.29>
	제30조 민간인의 참여 유도
	제31조 수련시설의 이용

장	조
	제32조 청소년이용시설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34조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제35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제36조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제36조의2 인증의 사후 관리 제36조의3 인증의 취소 등 제37조 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조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제40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1조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2조 ,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삭제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48조 수련지구조성계획 제49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50조 수용 및 사용 제51조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제5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3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제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제56조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7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제58조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 제59조 남·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60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제61조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제62조 전통문화의 계승 제63조 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제64조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제65조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제7장 보칙	제66조 조세 감면 등 제67조 감독 제68조 수수료 제69조 권한의 위임 등
제8장 벌칙	제70조 벌칙 제71조 양벌규정 제72조 과태료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에 대한 조항들이 필요에 의해 추가 및 삭제가 반복된 결과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법률의 목적달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정책적 효과로는 첫째, 주5일 수업 등 새로운 사회·제도적 환경 변화에 주목하면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수련활동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대부분의 활동이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정책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스스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청소년 수련시설 종류에 청소년특화시설에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시설을 구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셋째,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활동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수련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도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할과 지방센터의 설립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활동정책사업의 제도화와 청소년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제공과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참여기록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기회 보장 및 활동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청소년활동진흥법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위해 국가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근거조항이 미흡하다.

둘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증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인증 프로그램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

셋째, 청소년 교류 및 문화활동을 청소년활동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어떻게 지원·관리하고, 청소년수련 및 단체 등에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넷째, 수련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조항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수련시설의 고유목적 사업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현재까지의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활동은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함과 동시에 기존의 여가 생활 중심의 청소년활동정책에서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활동이 사회적 서비스(지원)를 넘어 청소년활

등을 통해 삶(생활)의 의미 있는 도전과제를 찾고 스스로 노력하게 함으로써 자신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향후 진로와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등 기존의 청소년정책과는 차별화되는 청소년활동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청소년활동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의미에서의 청소년역량 개발 중심의 청소년활동 정책으로의 변화이다. 청소년 존재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에서 시작된 청소년활동이나 기존의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이거나 추가적인 활동으로써의 청소년활동의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는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청소년활동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분야에서 통용되는 청소년활동의 개념이나 용어적 한계를 넘어 좀 더 포괄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호환성(social compatibility)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역량 개발 활동은 청소년활동의 상위개념으로써 또는 청소년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사회 속에서 협력과 소통의 더 큰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단기적 성과 중심의 파편화된 청소년활동정책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화된 청소년활동정책으로의 변화이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이나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 또는 여가시간을 활용한 이벤트 중심의 가시적 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단기적 처방이나 성과 중심으로 변화해 왔다. 특히 청소년시설 확충을 통한 ‘놀 터’ 확대와 심심해하는 청소년을 위해 ‘놀 거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모색해 왔으나, 이러한 단기적이고 자극적인 대응으로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할 찾거나 성공적인 성인으로 이행이라는 종국적인 청소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보다 길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과 체험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적 역할 찾기와 사회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정책으로의 변화는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학습과 체험의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정책의 플랫폼 기능 확대를 위한 청소년활동정책으로의 변화이다.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활동·보호·복지 등을 중심으로 하되, 가족정책, 보건과 건강정책, 복지정책, 장애인정책 등과 어우러져야 한다. 청소년의 일상과 직결된 교육정책과 노동정책, 비행과 교정정책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청소년정책은 스스로 직접 집행 가능한 고유영역에 매달리고 싶은 자기 폐쇄성과 고립성의 유혹과 끊임없이 맞서며 새롭게 진화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청소년정책과 같은 사람중심, 대상중심의 정책이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과 같은 기능중심 정책과 나란히, 상호 중복되지 않는 나머지 영역으로 비껴나 자기 고유기능영역을 고집하면 할수록 정책적으로 주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광호, 2008b).

II. 현장에서의 논의사항

1. 개정방향의견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현장중심의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지도사에 관련 사항을 과감하게 기본적 골격은 청소년기본법에 남겨두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은 부분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이관조치가 검토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정의 조항상,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에 대한 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청소년들과 학모부들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용어정의가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가장 큰 맹점중의 하나가 바로 책무성이다. 국가 사무와 지자체 사무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여야 하며, 잘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벌칙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책임 정책실명제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시기적으로 적절해 보인다.

넷째, 청소년활동진흥법과 관련된 규제 제도로 비춰지는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도와 사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전면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운영현황으로 볼 때, 둘 제도 모두다 현장에서 외면 또는 발전이 아닌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는 안타까움이 있다. 실적을 위해 또 다른 강압적인 방법모색이 아니라, 현장이 알아서 찾아오고 따라가게 하는 제도로의 혁신이 요구된다.

다섯째, 청소년활동정책을 완성하게 하는, 안정적 국가 및 지자체 재정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육성기금의 확충방안 강구가 요구된다. 현재는 재원이 없어서 아무것도 손 못드는게 청소년활동의 현실이다. 특히 국공립수련시설의 경우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민간(개인) 및 법인 등의 수련시설들은 제기능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난관에 놓여있다.

여섯째, 청소년활동정책은 고유한 청소년육성정책의 핵심중 하나이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한 정책(산림청, 농림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부관광부 등)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사업과의 명확한 관계성 정리 필요하다. 일정부분 유사사업 추진 제동과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부분에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법적 정의, 내용,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은 관리적 측면에서 나름 잘 되어있다. 문제는 활성화 측면에서의 지원책은 보여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및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고제도 및 인증제도 등이 나름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의 도입으로 현장에서의 청소년활동의 위축되고 멀리 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청소년활동정책에 있어서 도전적이고 시범적인 새로운 시도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참여확대 및 도전의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의 체계화 및 운영의 다각화와 효율화가 필요하다. 비전문적인 정부산하기관에 운영 검증 없이 위탁주는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활동 전문지도인력 양성 및 배치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제 공간만 제공되는 시설 및 공간의 개념에서 전문인력이 함께 적극적으로 청소년지원(프로그램)하는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2. 개별사안별 제시내용

1) 청소년활동신고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우리사회에 큰 아픔을 주었던 무허가 인천해병대캠프사건, 세월호침몰사고 등과 같은 청소년대상 안전사고로 인한 대형 인재로부터 청소년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율적 청소년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2014. 1. 21] 개정되었으나, 오히려 이 조항으로 인해 청소년수련활동 현장의 위축을 초래하여 본 법률에서 규정한 청소년활동의 보장이 불가능해진 것을 보완하려는 것임.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사전신고제는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며, 유능하고 검증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활동이 활발히 운영되도록 기능해야함이 바람직하나,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정기적 시설 및 프로그램안전과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등에 관한 종합적 평가관리는 물론,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의무적 실시,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제도를 청소년수련시설까지 확대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적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이 제도의 청소년수련시설로의 확대 적용을 통해 발생한 수련활동현장의 문제는 다음

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첫째, 사실상 거의 모든 야외에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은 신고의 대상이 되며, 신고 시 조사하고 준비해야할 자료 및 작성서식이 너무 많아 현장 실무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둘째, 상기의 문제로 인해 기준이 모호한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분류되어 있는 야외에서 실시되는 수련활동프로그램과 숙박형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수련시설 내부를 활용한 단기형 비 숙박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어 수련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음.

셋째, 청소년수련활동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지도자(자원봉사자, 강사 등)에 대한 지나친 개인정보(원적지 호적등본 발급 요구 등)를 요구함으로써, 특히 재능기부와 나눔의 차원에서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수련활동의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차원의 강화와 아울러 청소년수련활동 위축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본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외 기관의 확대보완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조 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8(청소년단체의정의)에 의거한 청소년단체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좌동 1~4 좌동

현 행	개 정 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4.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 신 설 〉 5. 제10조 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서 <u>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u>과 <u>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u>에 의거 종합안전점검과 종합평가결과 ‘적정’이상의 등급을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신설) 6.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8(청소년단체의정의))과 동법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범위)에 의거한 청소년단체의 경우(신설)

2) 국가 지자체 위법사항에 대한 벌칙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집행에 있어서 마땅히 본 법을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하는 국가 및 지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고 나아가 불법적 운영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본 법의 정책대상인 청소년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나아가 일선에 청소년현장에서 충실히 법에 따라 일하고 있는 청소년전문가 및 시설·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가 불법적 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과 관련기관에 대한 양벌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 제정 취지를 재확인하고, 대국민 신뢰도와 청소년활동의 활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립 및 공립(지자체) 수련시설 감독 및 처벌’에 대한 조항 신설(제67조2)

- 국가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처벌 사항

1. 여성가족부 이외의 국가 정부부처에서 설립 운영하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불법 설치 및 운영사항
2.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단체가 아닌 기관에 불법위탁
3. 국립수련시설 설립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수련시설의 등록), 제14

- 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검토) 사항 미준수
4. 국립수련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7조(시설기준), 제18조(안전기준), 제18조의2(안전교육),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제 19조(운영기준),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제25조(보험가입),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제27조(수련시설 운영의 휴지·폐지 등) 사항 미준수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관련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2호, 3호, 4호 관련 사항의 위반
 2. 지자체 건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단체가 아닌 기관에 불법위탁
 3. 지자체가 지역내 건립한 수련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검토) 사항 미준수
 4. 지자체 건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7조(시설기준), 제18조(안전기준), 제18조의2(안전교육),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제19조(운영기준),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제25조(보험가입),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제27조(수련시설 운영의 휴지·폐지 등) 사항 미준수

3) 수련시설 종합평가 등에 대한 주기

청소년수련시설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집행에 있어 유사 사회복지사업법과의 차이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위탁 청소년시설 및 기관은 수련시설평가 외 기관 위탁 심사, 안전점검 평가, 감사, 식품위생관리 등의 잦은 평가로 인해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무엇보다 평가준비로 인해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예상될 수 있어 이에 따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일부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유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은 3년에 한 번씩 시설평가를 받고 있음.

청소년수련시설 평가결과를 기초로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시설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설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설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이 본 법 및 시행규칙의 취지임.

본 법의 시행규칙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역량개발과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원해야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서의 제 역할이 기대됨.

○ 주요내용

가.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에 대한 주기 개정(제9조의2 ①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청소년지도사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보완

청소년수련시설 참가 청소년의 안전관리와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수련시설 전문 인력의 근무안정성 유지, 청소년 지도인력 배치의 현실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현재 청소년기본법(제25조 2항 관련)상에 명시되어있는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최소 배치인원을 의미하고 있어, 신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현행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최소인력만을 배치하는 문제 발생으로 청소년 지도인력 배치 기준의 현실화 필요. 이미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지도인력 배치기준을 재보완 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를 법에 반영

〈2017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2017.1)〉

Ⅲ-1-나. 종사자 관리

1) 청소년지도사 배치

*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를 최소 1.5%이상 확보(권장)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평가지표 4.1.2 수용정원대비 청소년지도사 확보율

* 매우우수(2.5% 이상), 우수(1.5%초과~2.5%미만), 보통(1.5% 준수),
매우미흡(1.5% 미준수)

최소인력 배치 시 참가 청소년들의 안전성 결여 및 청소년지도사 업무과중 문제 발생으로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의 질 저하 우려

또한, 청소년지도사 직무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도 지도인력 배치 기준의 재보완 필요

○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별표 5)’ 보완(제25조 2항)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참가 청소년의 안전관리와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비율 현실화 마련

〈 현행 〉

[별표 5]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가. 청소년수련시설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1)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야영장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 개 정(안) 〉

[별표 5]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가. 청소년수련시설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명을 초과하는 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1) 2급 청소년지도사 2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야영장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비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5)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및 청소년자치기구 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수행에 있어 학교 밖에서 공식적 활동에 대한 내용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학교 밖 공공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과 청소년 자치기구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육성 정책이 현장에서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잇점이 될 수 있도록 일 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와의 협력’ 사항에 대하여 추가(제9조 ⑤,⑥항)

나. 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0조(활동기록,유지관리등) ‘교육부의 협력’사항 추가(제20조 ③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수련시설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④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할 때 필요하면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⑤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등 청소년 자율활동을 학교에 제시하고 방과후 자율동아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⑥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교 안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자율동아리의 활동내역을 학교에 제시하고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20조(활동기록 유지·관리 등) ① 국가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활동이 끝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활동참여 청소년의 기록 자료가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참여기록이 청소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활동기록 유지·관리 등) ①②좌동 ③ 교육부는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자격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집행에 있어 기본이 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청소년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함.

○ 주요내용

오늘날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다원화된 청소년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청소년 수련활동 서비스 제공이 전략적으로 필요함.

또한 청소년활동 정책은 학교교육정책과 더불어 창의적체험활동, 진로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지역자원 연계·활용을 통해 청소년활동 정책의 체계화를 추진해야 하는 실정임.

이처럼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사회적 역할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관리자나 실무자들에 대한 효율적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은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에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조직에서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대표자의 경영역량과 관련된 요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요구됨.

따라서 운영대표자의 청소년활동시설 종사경력 및 자격유무 등의 기준을 강화하여 대표성을 확보하여야함.

또한 청소년지도사의 능력개발을 선도하는 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로서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증제도는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가 직접 공급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현장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 냄.

그러나, 현재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 1급 취득자 1,615명, 2급 취득자가 30,0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에 대한 법령에 강제성이 없어, 법규로써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음.

이에 청소년지도사들이 교육 - 자격 - 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기능 및 역할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운영대표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그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여야 함.

7) ‘청소년지도사 보수 연수’ 대상 정의

청소년기본법의 집행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의 대상자의 기준이 현실여건에 맞지 않게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 일선 현장에서 청소년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현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의 대상자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로 한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국가 정부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일 필요한 상황임. 나아가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일 필요한 상황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사항에 대해 보수교육 의무 참여 대상 기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확대함(제2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8) ‘청소년지도사 보수 연수’ 대상자 적용시점

청소년기본법의 집행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인 학교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며,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참여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이 현장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보수연수 대상자의 적용시점’인 청소년 자격증을 취득한 해를 포함한 3년 동안은 보수교육을 유예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제10조2호1항)

나. ‘청소년지도사 보수연수 대상’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대한 확대 보완(제3조1호)

9)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시 수용인원 산정기준 마련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 시설에 대한 기준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마련되어 있으나, 수련시설 각 활동장별 수용정원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있어 직원확보율, 참가 청소년의 안전성 확보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수련시설 수용정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현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표3 관련)에 명시되어있는 수련시설의 시설 기준은 입지, 구조, 설비기준 등만 명시되어 있어,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용정원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동일면적에 대한 수용정원이 각 시설별로 상이한 문제 발생,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등급의 상향 획득을 위하여 임의대로 수용정원을 조정하는 사례 다수 발생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참가청소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등) 등의 검토로 청소년수련시설 수용정원의 명확한 산정기준 마련

○ 주요내용

-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별표3의 청소년수련시설 각 활동장별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명확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등을 통한)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2. 개별기준

가. 청소년수련관

구 분	기 준
1)면적 2)실내집회장 3)체육활동장 4)자치활동실 5)특성화수련활동장 6)상담실 7)휴게실 8) 위생시설 9) 지도자실 10) 기타설비 11) 수용정원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청소년수련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수용정원 산정 방법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을 준용한다. -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한다.) - 자치활동실, 강의실, 특성화수련활동장 등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청소년문화의 집

구 분	기 준
1) 활동시설	1. 공통기준 나목의 1) 및 5)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2) 휴게시설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실내공간 또는 마당을 청소년의 휴식 및 대화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3) 위생시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기타시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수용정원	1)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청소년수련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수용정원 산정 방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을 준용한다. -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한다.) - 자치활동실, 강의실, 특성화수련활동장 등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청소년수련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 법 시행령 [별표4]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을 준수할 수 있다.
[참고자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1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6조 조세감면 수정 및 보완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국내에서 각종 시청각 교육자재(영상, 조명, 방송 등)와 인증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기자재, 실습, 실험 등의 비품을 구입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교육서비스 업종인 수련시설에 납품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등은 세제 혜택을 받으나 공산품이나 가공식품은 납품을 받아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민간시설(비영리법인, 영리법인)로 분류되지만 이는 모두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정의에 정하는 청소년육성, 활동, 보호 등을 수련시설에서 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필요한 감면의 혜택이 확대되어야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6조(조세 감면 등)에 국내에서 직접 구매되는 교육기자재 및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감면 조항인 제66조③항에 삽입.

나. 수련시설에서 급식으로 사용되는 제조된 식품, 공산품도 감면 혜택 내용 제66조③항에 삽입.

현 행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1. 국내에서 구입하는 시청각 교육기자재, 실습, 실험 등 비품 감면조항 없음 2. 식자재에 제공되는 제조식품, 공산품 등 감면 조항 없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6조(조세 감면 등)③항 보완 1. 국내에서 구입하는 시청각 교육기자재, 실습, 실험 등 비품 감면 내용 삽입 2. 식자재에 제공되는 제조식품, 공산품 등 감면 내용 삽입
제66조(조세 감면 등) ① 국가는 활동진흥원·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 기자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66조(조세 감면 등) ③ 국가는 청소년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사용하는 교육기자재, 실습, 실험에 필요한 비품장비와 식자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 기자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관련 사안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1993년 1월에 시행된 청소년기본법의 틀 아래 국가와 지자체를 대신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및 특화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왔음

숙박기능을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 수련원은 전국 189개소중 민간 125개소(66.14%), 국공립 64개소(33.85%) 로 민간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18.12.31기준)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중 주로 민간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은 넓은 숲 조성 및 야외 활동장, 체험활동시설·장비 등을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특성이 있음. 이는 타 업에 비하여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큼.

최근 저출산문제, 태안 해병대사건, 세월호 사건, 메르스 발병 등으로 민간 및 법인의 수련시설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국립 수련시설(전국 5개소) 및 지자체 수련시설의 경우, 어려운 운영상황을 국고와 지방재정을 통하여 시설개선비 지원 및 운영비를 통하여 극복하고 있음. 하지만 민간 및 법인 시설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호연지기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민간 및 법인 수련시설의 운영유지는 미래의 청소년 성장지원 환경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

이에 국립 및 공공 수련시설의 지원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제도적 운영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정부의 민간참여유도 정책목적 달성 및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기업상속공제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타 업과의 형평성 확보)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시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적 역할의 공익성이 인정되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산업분류 업종이 교육서비스업으로 변경('17.1.13 고시, '17.7.1 시행)되었음. (기존 숙박업→교육서비스업)

기업상속기업의 원활한 상속을 위하여 현 정부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제 2019-149호)를 통하여 기업상속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음

○ 주요내용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기업상속)에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 보완

-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 요청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현행 >>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개정 요청안 >>
가~타 (생략) 파. 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 원훈련기관(8565),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69) 하~너 (생략)	가~타 (현행과 같음) 파. 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 원훈련기관(8565),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69), <u>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85614)</u> 하~너 (현행과 같음)

참고문헌

- 정효진(2010). 한국 청소년정책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육성제도론. 서울:양서원.
- 이광호(2008b).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생애 전기 통합형 사회적 지지 체계의 재설계-,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1회 한국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 3-40.
- 김영한·조아미·이승아(2013), 청소년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청소년과 미래-2015 청소년정책 환경 분석보고서(youth and the Future-Effective youth services for the year 2015) 호주「National Youth Affairs Research Scheme」,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미래연구회 옮김, 국가청소년위원회
- 방은령(2001), 청소년보호와 육성에 관한 제도개선안-청소년보호법과 기본법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1호 vol. No1, 23-40

미래지향적 「청소년 복지지원법」 정비 방안

서 정 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래지향적 「청소년 복지지원법」 정비 방안

서 정 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왜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정비해야 하는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청소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총인구 중에서 청소년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 또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이유진·김영한, 2017). 보다 심화되는 전국가적인 교육열과 높은 교육에 대한 열망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업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심리·정서·인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은 70% 안팎의 수준을 나타내나(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가진 청소년이 처한 어려움은 보다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지식적으로 산업사회지식에서 정보화사회 지식을 포함하여 새로운 환경인 4차산업에 대한 지식 등까지 파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다양한 유해환경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청소년복지의 개념은 기존의 소극적, 잔여적 복지에서 보다 적극적, 포괄적 복지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다(홍봉선·남미애, 2018). 이에 청소년 관련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적 내용을 내포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 또한 강조된다.

청소년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최근의 사회적 관심은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지원에 관심이 비교적 집중되어 자칫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과 관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대학원,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교육욕구와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전방위적 복지지원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 청소년관련 법률 중 시급하고 우선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대해 앞으로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고를 작성하기 위해 연구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선진 외국(독일, 미국, 일본)의 청소년관련법과 관련하여 청소년관련 법령의 구조(구성), 청소년관련 세부 법령 주요 내용, 청소년관련 법령 간의 관계,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 청소년복지 관련 학계¹⁾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래지향적 법령으로의 발전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지(안) 내용은 [부록 1]에 수록되어 있으며 선진 외국 사례는 외부 집필진¹⁾이 작성한 내용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췌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II. 들어가기에 앞서: 법률체계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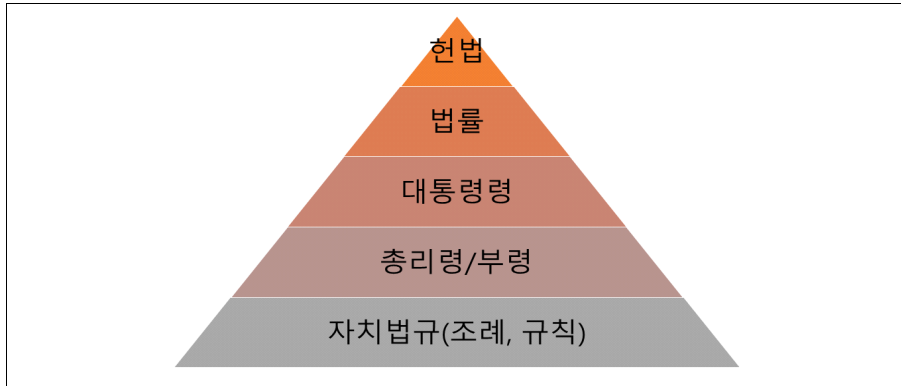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법률체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의미하며 국회 또는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과 법률의 범위에서 규율되는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한다.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ㄱ) 본칙: 총칙, 해당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들(실체 규정), 보칙, 별칙, (ㄴ) 부칙: 시행일, 유효기간,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법제처, 2019).

법령²⁾의 입안방식은 개정(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폐지로 나뉘며 (ㄱ)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개정하려는 조문 수가 3분의 2 이상인 경우, 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령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이며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칙들도 검토하여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칙들은 다시 전부개정법률안 부칙에 규정해 주어야 한다. (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는 규율하려는 입법사항이 기존 법률 개정으로 규정하기 곤란한 경우이며 (ㄷ) 법률을 폐지하는 경우는 법령의 효용이 다해 폐지하는 경우(폐지 법률안) 또는 다른 법률과 통합되면서 폐지하는 경우(부칙에서 폐지)이다(법제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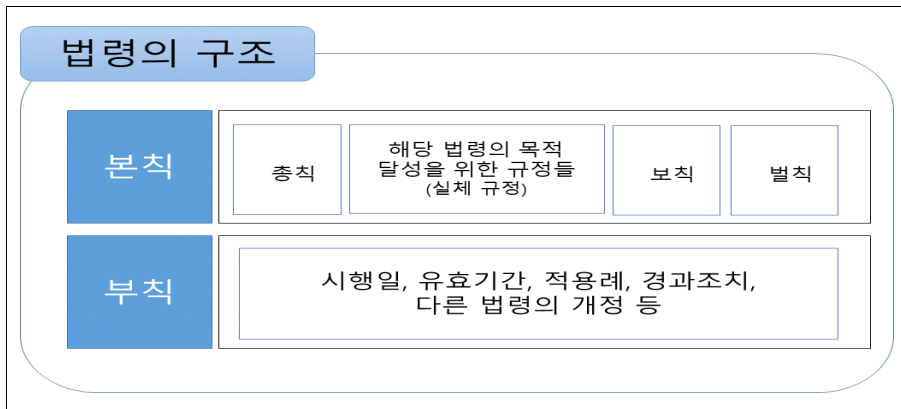
1) 독일사례는 연세대학교 김정환 교수, 미국 사례는 한세대학교 박선영 교수, 일본 사례는 대구한의대학교 강영배 교수가 원안을 작성하였으며 본 고는 이 내용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발췌 제시하였다.

2) 법령의 이름은 앞서 연결되는 표현이 '명사'인 경우 「00법」으로 '∼에 관한'인 경우 「00에 관한 법률」로 표기한다(법제처, 2019).



* 출처: 법제처(2019). 2019년 제2기 법제실습과정. 세종: 법제처. p. 5

[그림 1] 법령 상호간의 체계



* 출처: 법제처(2019). 2019년 제2기 법제실습과정. 세종: 법제처. p. 5

[그림 2] 법령의 구조

총칙은 해당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일반적 규정 순서는 (㉠) 목적 규정, (㉡) 정의 규정, (㉢) 해석 규정, (㉣) 국가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실체규정에 규정되는 내용들은 (㉠) 허가, 특허, 인가, 등록, 신고, 지정, 인허가 의제, (㉡) 결격사유, (㉢) 과징금, 부담금, 연체금과 가산금, (㉣) 보조·출자·출연, 재정·회계제도, 기금, (㉤) 자격부여, 외국인의 지위, (㉥) 위원회, 특수법인, (㉦) 행정쟁송이다. 보칙규정은 법령의 총칙과 실체 규정에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기술적·보충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적 규정 순서는 (㉠) 수수료, (㉡) 출입검사와 질문, 보고의무, (㉢) 청문, (㉣) 권한의 위임·위탁, (㉤) 직무대리, 행정업무의 대행,

(㉞)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㉟)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이다. 벌칙규정은 법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충적이며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수단으로 일반적 규정 순서는 (ㄱ) 형벌, (ㄴ) 과태료이다. 부칙규정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한 조치,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으로 일반적 규정 순서는 (ㄱ)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ㄴ)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ㄷ)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ㄹ) 법령의 시행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 (ㅁ)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이다. 법령 입안시 (ㄱ) 비례의 원칙, (ㄴ) 평등의 원칙, (ㄷ) 신뢰보호의 원칙, (ㄹ) 적법절차의 원칙, (ㅁ) 명확성의 원칙, (㉡)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법제처, 2019).

Ⅲ.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다음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총 10개의 장 45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³⁾. 10개의 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장의 법률조항은 표와 같다(청소년복지지원법, <http://www.law.go.kr/>).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법원은 헌법 제34조 제4항과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이다(박진규, 2004, 이용교, 2004). 헌법 제 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바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는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청소년기본법, <http://www.law.go.kr/>).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구성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부록2]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제4항에 따르면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청소년기본법, <http://www.law.go.kr/>).

〈표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

장	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실태조사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제3조 청소년의 우대 제4조 청소년증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5조 건강한 성장지원 제6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제7조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제8조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1조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제12조 상담과 전화 설치 등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13조 상담 및 교육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16조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제17조 삭제 <2014.5.28> 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제19조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제20조 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1조 보호지원후견인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22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3조 정관 제2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25조 보조금 및 출연 등 제26조 임원 제27조 이사장 제28조 「민법」의 준용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제32조의2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제33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34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제35조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제36조 청문

	제40조 예산의 보조 제41조 기관·시설 등의 평가 제4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의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제10장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과태료
부칙	

* 출처: “청소년복지지원법, <http://www.law.go.kr/>”을 재구성

Ⅳ. 관련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본 절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비해 비교적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이용교(2004, 2007), 박진규(2004), 조성혜(2011), 김선애(2015)는 청소년복지법 또는 청소년복지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윤향희·김경제(2016)는 중도입국청소년, 안미영(2017)은 청소년증 등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복지지원법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살펴본 이용교(2004)는 2003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한 청소년계의 요구가 법제화된 것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제안내용 중 상당부분 특히 청소년의 자립지원(7개 조항), 청소년복지위원회 및 청소년복지후견인(9개 조항), 청소년복지시설(12개 조항), 보칙(6개 조항)이 대폭 삭제·축소되어 입법 취지가 상당부분 손상되었을 뿐 아니라 당초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의원 발의한 내용은 본문 78개 조항과 부칙 3개로 이루어졌던 데 반해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본문 21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된 다소 짧은 법률의 형태로 완성되었으며 당초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이 의욕적인 내용을 담았던데 반해 입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복지를 위해 예산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이나 다른 부처와 협조를 해야 할 일 등은 거의 삭제된 형태로 예산을 추가로 쓰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반영되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청소년 인권보장과 복지향상과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인 복지정책과 연결되지 않은 선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ㄴ) 청소년 건강보장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것만을 명시할 뿐 청소년에게 질병과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사후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희귀병 난치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 청소년, 비만 청소년 등에 대한 관리 상담, 치료지원이 시급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ㄷ) ‘청소년 자립지원’의 경우 청소년 복지지원법안 제정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부처 간 업무조정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용이 삭제되었다. (ㄹ) 청소년복지의 개념을 법안에서는 청소년 복지의 개념을 ‘청소년의 기초생활의 보장, 건강 및 안전의 확보, 직업기반의 조성, 건전한 문화·정보·환경에의 접근 등을 통하여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기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고 하여 광의의 청소년 복지개념으로 상정한 데 반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복지의 정의를 청소년기본법에 기반하면서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고 하여 협의의 개념으로 축소 정의되었다. (ㅎ) 청소년복지지도자를 규정함에 있어 청소년상담사의 역할은 명시된 데 반해 사회복지사 등의 역할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실제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복지 전문가가 대부분 사회복지사임에도 이를 배제하고 전문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ㄴ) 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이에 필요한 예산 조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관련하여 이용교(2004)는 향후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과제로 청소년복지를 어떻게 법적·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하여 어떻게 실질적으로 협력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박진규(2004)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특정의 법은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구성원 다수가 특정 사항에 대해 복잡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해 낸 결과물이자 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바 특정 사항에 대한 법률의 구성은 그 시대의 사회구성원들의 가치를 낱줄과 씨줄로 엮어내듯 시대 정신을 망라하고 포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소년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되어 도출된 기본원칙은 청소년육성5개년계획(現 청소년기본계획)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청소년 관련법은 청소년육성5개년계획(現 청소년기본계획)과 유기적 관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이러한 청소년육성5개년계획(現 청소년기본계획)을 충실히 구현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청소년복지법규과 다른 청소년제도와의 유기성 확보,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의 명확성, 복지의 우선 순위에 따른 고민, 복지주체들간의 협력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2004년에 이어 다시 살펴본 이용교(2007)는 2003년 12월 30일 제정되고 2005년 3월에 시행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쟁점별로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에서 특별지원청소년의 범위를 해당 청소년이 속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 이하인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청소년복지지원의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것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향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회복적 보호지원이 비행청소년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에 신청에 따라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실시되나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비교적 최근 연구로 김선애(2015)는 청소년복지권의 성격과 증진 방안을 살펴보면서 ‘사회권으로서 복지권은 사회성원이 갖는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이러한 인식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 소홀한 경향이 있으나 최근 복지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대의 많은 국가들이 복지제도와 전달체계 그리고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권리로서 청소년복지권의 특성과 성격을 명확히 규정,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복지적 권리를 증진, 향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복지권은 현재의 권리만이 아닌 미래의 권리까지도 상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또한 강조하였다. 청소년복지권은 아동의 그것보다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능동적 복지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부모의 양육책임(제18조), 가족환경이 박탈된 아동(제19조), 심리적·신체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생존과 발달(제6조), 장애아동(제23조), 건강 및 보건서비스(제24조),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 시설(제26조), 생활수준(제27조), 교육(제28조), 휴식, 여가, 문화생활(제31조) 등이 청소년복지권과 비교적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청소년의 복지권은 성인으로부터 상당부분 독립적인 능동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보호적 권리로서 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역량개발을 염두에 둔 권리로 자리매김하고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더 포괄적이고 확장적인 주체적 권리자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복지권은 자유, 자기결정, 자율성 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복지권은 청소년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 어른과 사회에 의해 조정되거나 통제되어서는 안되며 현재 청소년의 삶과 미래 청소년의 누려야 할 생활환경에 따른 시공간적 맥락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주체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자율적 역량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의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복지권과는 구분되는 규범 구조를 갖고 있음 또한 강조되었다.

V. 외국의 청소년 관련법⁴⁾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주는 시사점

선진 외국(독일, 미국, 일본)의 청소년 관련법 검토에서 도출된 우리나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방안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독일의 청소년 관련법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주는 시사점

독일 청소년정책의 핵심적 개념은 ‘청소년지원(Jugendhilfe)’이다. 청소년의 양육은 부모가 일차적으로 담당하나 양육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가의 청소년지원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참여를 권고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성인들이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청소년을 지원해야 한다’고 정의된다. 독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동일한 범주에서 보호한다. 청소년지원의 주체로서 친권자 이외에 가정법원이 중요한 기능을 행사한다. 청소년지원 국가기관은 가정법원 이외에 청소년청이 중요하며 청소년지원의 법률적 근거는 사회법적 제8권의 아동·청소년지원법이다. 독일에서 아동·청소년지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인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청소년청은 급부제공과 그 밖의 과제에 주요한 기능을 두고 있다. 청소년지원은 사회보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전체사회, 교육,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된다. 1990년에 청소년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이 독일 사회법전 제8권에 함께 통일적으로 편입되었다.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청소년지원을 미성년자에 제한하지 않고 27세 미만의 자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청소년근로보호법이 존재한다. ‘김정환’은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시사점으로 첫째,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 인식과, 지역시행 기관의 통일, 둘째, 아동 담당기관과 청소년 담당기관의 통일, 셋째, 아동과 청소년의 연계성 및 청소년과 초기 성년의 연계성, 넷째, 청소년의 사회주체성의 인정, 다섯째, 장애 청소년과 외국국적 청소년에 대한 지원, 여섯째, 청소년정보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들고 있다.

2. 미국의 청소년 관련법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주는 시사점

미국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공식적으로 관할하는 연방기관은 보건·인간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이며 이 중 가족·청소년서비스국(Families

4) 외국의 청소년 관련법 세부 내용은 추후 발간될 예정인 “김영한·서정아·권일남(2019 예정).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령 정비 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and Youth Service Bureau)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법은 요보호 아동부조, 위탁돌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에 위기가족과 조부모를 지원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청소년 복지관련 연방법령으로는 요보호 아동부조를 위한 사회보장법, 위탁돌봄을 위한 가족우선 예방 서비스법, 양육지원을 위한 손자양육조부모 지원법, 취업지원을 위한 경제 기회법, 청소년 환경보호단 법, 인력혁신 및 기회법, 봉사활동을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 봉사법, 건강권 보장을 위한 아동건강법, 건강 및 기아 없는 아동법, 노동을 위한 노동규준법, 가출·미아·노숙 청소년을 위한 가출 및 노숙 청소년법, 실종·착취·가출 아동보호법 등이 있으며 관련부처로는 보건·인간서비스부, 노동부, 농업부, 법무부 등이 있다. 미국의 청소년 관련 법에서 주지할 만한 사항은 청소년 관련 업무 조율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국 청소년법(Young Americans Act)과 연방청소년 조정법(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는 각각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관 간의 연방 조율을 강화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미국의 청소년 관련법의 특징으로 ‘박선영’은 부서간 협력을 위한 법 제정 외에 연구와 평가 강화,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다양한 법령 제정을 들고 있으며 미국의 청소년관련 법령 중 22주간의 합숙 훈련과 12개월의 사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자, 비행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자립과 교정교화를 강화하는 ‘비행청소년, 퇴학 청소년을 위한 국방부 운영의 국가방위 인가법’을 도입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3. 일본의 청소년 관련법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주는 시사점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법제도 보다는 조직을 통해 추진되어 왔으나 2009년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맥락에서 청소년 정책인 추진되게 되었다.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노동기준법, 청소년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나타나 일본 사례 원고에 따르면 육성, 보호에 비해서는 복지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적 관심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와 관련하여 두드러지는 것은 청소년 고용 및 직업 촉진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만 35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면서 청소년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강영배’는 일본의 청소년관련 법령이 우리나라에 가지는 시사점으로 청소년 연령 설정에 대한 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규제를 목적으로 한 법령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비교적 엄격하게 설정하는데 반해 지원 또는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서는 청(소)년 연령을 느슨한 형태로 설정하고 있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청소년고용 촉진법에

서는 청(소)년 연령을 기본적으로 35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45세 미만의 자 까지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난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등교거부 청소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 정책에 있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VI. 전문가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가 심층면접 대상자는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법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학계·현장 전문가(교수·연구원·공무원)이며 각각 2시간 이내의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면접내용을 녹취하여 중요 사항을 정리·제시하였다. 심층면접 세부내용(안)은 [부록 1]에 나타나 있다.

1. 개요 및 실제

인터뷰에 응한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A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의 제·개정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우선 아마 그 때가 2003년인가 될 거예요. 이 무렵에 기본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활동진흥법을 제정하고 복지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뭐 청소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으로 개정하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뭘 제정을 두 가 지나 하느냐. 그러니까 약간은 국회에서 준비하는 행정부에, 쉽게 말해서 골라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활동진흥법과 복지지원법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청소년 준비하는 쪽에서도 활동 진흥은 주로 청소년학과 교수님들의 관심사니까,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진출 같은 거 고려해서. 그래서 활동 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복지지원법은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았어요, 이것에. 그런데 다른 분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쉼터에 관한 내용은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당시 부처에서도 강하게, 꼭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 하면 세 개 다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시던 분들은 절실성이 좀 컸어요. 그 때 저는 복지지원법을 꼭 제정해야 된다. 다만 복지지원법의 제정을 당시 교육부나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도 별로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어떤 언급이라든지, 또 뭐 직업 훈련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뭐하러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다면 이미 하고 있는 쉼터 중심으로 만드는 것은 반대 안하지만, 이런 데 이런

데 하는 건 우린 다 반대한다. 그래서… 당시 청소년 계에서는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세 개를 다 해달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서라도 이걸 살릴 것인지, 아니면 활동진흥법 위주로만 갈 것인지. 저는 여러 차례 법을 연구해보고 또 제정하는 데 관여해 본 바에 의하면 제정하는 것은 어려운데 개정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그 때 당시 초안 작업을 했어요. 그때 원래 구성했던 내용의 아마도 거의 반 이상을 날렸죠.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내용이 다양한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은 이런 법제정 과정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이런 걸 이해하는게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내용이 법 간 조정으로 인해 내용치 축소된 부분 또한 강조되었다.

“(중간 전면 개정 때 내용이 빠진 이유는) 그 때 당시 아동 청소년 업무를 복지부로 다 보냈어요. 그랬을 때, 복지부에도 아동복지법이 있고 또 우리 이 쪽에는 청소년기본법이 있고, 또 활동진흥법이 있고, 또 복지지원법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한 1년 정도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아동청소년기본법,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청소년복지법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소년 업무가 복지부에서 여가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굳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갈 때의, 그 때의 기초는 뭐였냐 하면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서 강조하는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법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요보호 아동이나 청소년을 돌보는 일은 복지지원법에서 다루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기초였는데 이게 인제 이렇게 무산 되면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 그 대폭 개정을 한 번 할 때 아마도 인권과 관련된 것은 기본법으로 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건강 진단은 지금도 복지 쪽에 남아 있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때 한 번 좀 이렇게 법 간의 조정을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B 교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내용이 중기 청소년(13세-18세)에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상의 청소년연령 중 19세-24세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복지지원법은 느낌ियो,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이 지금 우리가 기본법에 의한 9세에서 24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한 쪽에 치우친 느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인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면 뭐 9, 10, 11, 12 뭐 이런 쪽, 1318을 제외한 전기 청소년하고 후기 청소년을 복지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조금 없다는 느낌. 그 정도의 연령대에 맞춰서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고 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연령대를 다 포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언뜻 봤을 때, 저같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적에는 너무 법이 후기하고 전기는 좀 없고 중기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후기 청소년한테 가야 되는 어떤 복지지원, 사실은 우리가 1318 지나가면 대학생 연령대거든요. 그들 연령대에 필요한 것들이 분명 있을 건데, 인간의 생의 단계를 보면 단계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비슷하겠지만 전 그게 제일 많이 사실 걱정, 더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한 9살, 10살 애네들한테는 어떤 복지가 중요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히 떠오르질 않고, 우리가 뭘 하고 있지 그런 게 잘 생각이 안나더라고요.”

C 박사는 아동·청소년 법률간 지원 범위나 내용이 다수 중복된 점을 한계점으로 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보면 긍정적인 측면은 청소년을 어떤 주체로 해서 다양한 법률들이 있다는 점은 좋은데 이 법률들이 사실은 내용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복지지원법이나 아동법이나 각각의 영역들이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이나 아동법이나 각각의 영역에서 조금 조금씩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한계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청소년이 19세 미만이지만 실제 법상으로는 9세부터 24세까지인 법도 있고 19세 미만인 법도 있고, 사실은 아동복지법에 보면 18세 미만인 법도 있고 막 이런데… 보면 대상은 동일해요. 보면 20세 이상만 다르다 뿐이지 대상은 거의 고등학생까지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어떤 부처의 법이냐에 따라서 지원 범위나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게 좀 문제점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법이 각각 개념 정의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적용되는 것들은 사실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복지나 보호의 관점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다는 건 동일한 것 같은데 법이 어떤 부처의 법이냐, 그리고 그 법 내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너무 다르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지금 현행법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딱 보시면 청소년기본계획이나 아동기본계획 이런 것들 다 보시면 흐름은 거의 유사해요. 대상만 다르게 뭔가 법률상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료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부분, 보호와 관련된 부분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관련 센터들도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는 센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혜를 받는 아동이나 청소년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동일한 건데 어디에서 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법상으로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C 박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의의로 청소년 지원을 위한 규정이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점을 들고 있었다.

“예를 들면, 예방과 복지에 관한 규정들도 더 많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청소년 우대와 관련된 규정들도 더 거기에 구체화된 내용들이 담기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된 것도 여자 청소년에 대해서 생리대 지원해주는 것도 시행령으로 딱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더 운영이 구체화 된단든지 그래서 좀 구체성을 갖는 면에서는 점점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전반적 실효성, 구체성, 체계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목적 및 서비스 내용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복지지원법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열거는 해놓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다 구동되고 있냐, 라고 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내용이 대다수인 게 제일 한계점인 것 같아요.” “제가 딱 봤을 때 복지지원법이 다른 법에 비해서 체계성이 조금 부족하단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제 1조의 목적

부분이 그냥 청소년 기본법에 있는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법률들을 보면 이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구현하고자 이 법을 제정한 다, 뭐 이렇게 목적이 되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청소년복지 향상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하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목적에서, 그냥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복지에 대한 부분 우리 건드려, 이렇게만 기술을 해놓고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복지 부분을 지원할지를 구체성을 좀 띄어야 되거든요, 목적 개념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른 법률에 비해서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새롭게 정비되면 좋겠다. 그래야지 방향성도 그렇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2. 개선방안

A 교수는 아동·청소년 시설간 서비스 분균형이 심각하며 아동복지법상 양육시설에 편중된 지원과 권한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게 뭐 사실은 이렇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 청소년복지는 아동 복지와 관련이 높기 때문에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시작할게요. 아동복지하면 가장 전통적인 시설이 아동양육시설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동이 양육시설로 가면 자동으로 시설장이 후견인이 돼요.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으로 가면, 안돼요. 그 다음에 가정위탁으로 가면 안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아동이 매우 취약한 거죠. 그 다음에 양육시설로 가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다 되고 그 다음에 퇴원하면 자립지원정착금 주고 또 주거 지원도 제대로 되고, 그런데 이 공동 생활가정으로 가면 지원이 시설 당 한 달에 한 30만원 밖에 안돼요,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 쉼터의 경우에는 더 어려워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아동양육시설에 가는 경우랑 청소년복지 시설에 있는 경우랑 지원이 달라요. 그러면 안돼요. 어딜 가나 똑같이 받을 수 있어야 해요. 너무 차이가 나요.”

최근 복지 영역에서 특히 중요성과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는 자립과 관련한 지원에 있어서도 아동·청소년 시설간 서비스 분균형이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문제는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 있느냐, 어떠한 법체계 하의 시설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수혜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립지원도 제대로 안 해줘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퇴소 이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여기(양육시설)는 퇴소 이후에도 최소한 5년은 관심이 있어요. 가정위탁은 실제로 말하면 18세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설계가 됐느냐. 여기(양육시설)는 고아일 거라는 상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고아가 10%도 안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모가 있거나 이런데 그 친구가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양육시설)가 주로 영아나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중고등학생도 적지 않아요. 특히 학대받는 아동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 쉼터로 빠져 나간다 그러면 생계급여 안돼요. 의료급여도 아무

것도 안돼요. 그 다음에 애들이 18세가 돼도, 예를 들면 자립형 쉼터에 있었다, 중장기 쉼터에, 그러면 18세 되면 끝이에요. 아무 것도 없어. 물론 밥은 먹여주죠.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대학 갈 때 우선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국가 장학금을 주거나,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애기가 이 상황을 다 안다면 그러면 이리(양육시설) 들어가야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데가 양육시설이에요. 부득이하게 가야 한다면 공동생활가정으로 가려고 해. 그런데 특히 고등학생 쯤 됐다 그러면 여기(양육시설)는 절대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죠.” “바로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런 거일수록 아동청소년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동양육시설로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 보장도 되고 대학교 입학도 되고 국가장학금도 받고 다 해주는데 이런 데로 가면 법에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전달 체계가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자립지원서비스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농후하죠.”

관련하여 A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기 보다는 체계, 법에 관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의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봐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것은 어디에 있나 하면 아동복지법에 자립지원 내용이 있어요.” “저는 추가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존에 있는 서비스라도 제대로 차별 받지 않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청소년복지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 시설의 종사자 처우가 열악하며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하였다.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거를 통합해서 일원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던 복지 분야에서 일하면 처우를, 기준이 100이라면 첫 해에는 80%, 두 번째 해에는 85%, 세 번째 해에는 90% 이런 식으로. 이 밑으로는 없애 버렸어요. 무조건 없애 버렸어. 그래서 제주도는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생활가정도 처우가 매우 좋아요. 그런데 늘 청소년 분야, 여성 분야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면 또 처우가 다르게 돼요. 이 분야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그 이유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같은 청소년분야라도 상담복지센터는 제대로 처우 해주는데 다른 데는 안 해주잖아요.” “(청소년복지법의 시설들이 사회복지법 상으로 인정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직 연결이 안되는 건가요?) 안되는 거죠.”

A 교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시 청소년복지 시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단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어쨌든 메인 중의 메인인 쉼터예요. 어쨌든 청소년쉼터 협의회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쉼터와 관련되어서 많은 전문성이 있는 분을 만나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난 몇 년

동안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은 쉼터 협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이 많아요. (쉼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쉼터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고..."

또한 현재 대면·전화 등의 서비스 제공 방식의 활용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에서 기술,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지금 많은 서비스가 너무 대면 서비스나 전화로 하는 서비스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지 않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표 어떻게 사셨어요? (인터넷으로 샀죠) 그렇죠? 전화로 산 게 아니죠. 웹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자기 카드 번호 누르고 땡 하면 끝이죠. 바꾸고 싶다 그러면 몇 개 누르면 끝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청소년 상담 서비스나 청소년 각종 활동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찾아가거나 전화가 오거나. (요즘은 다 상담도 웹 상담으로 한다고) 그런데 웹 상담의 상당수는 PC 상담, PC 통신 상담 식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글을 올려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글을 해주거나 그러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서비스 내용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디렉토리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관리하는 쌍방향 온라인, 오프라인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포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복지포털로만 청소년에게 다양한 정보와 디렉토리를 제공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 예를 들면 내가 19세 청년이라고 가정해보요. 군대를 어떤 방법으로 가면 월급도 받고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대접을 받는 방법으로 군대를 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상담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전화로 다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카톡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곤란하죠. 차라리 예를 들면 한국에서 군대에 가는 방법은 1번, 현역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뭐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현역으로 가는 방법 중에서는 네가 학사 장교로 가는 방법도 있고, 기술병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기술병은 이런, 이런 게 있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디렉토리를 짤 만들어가지고 이 디렉토리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지식인은 어때요, 자기가 궁금한 걸 치면 누군가가 답을 올려 주잖아요. 그런데 그 모범답안만을 짤 정리해 가지고 올려놓는다고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서비스가. 자,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고등학교를 좀 공짜로 다니는 방법이 있을까? 교육 급여라는 게 있어요. 50% 이하의 소득 인정인, 자기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이 50% 이하면 교육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실제로는 60% 이하의 고교 학비 지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교육청 사업이에요. 교육청에서는 알려주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일이 아니니까. (모르고) 그런데 대학생은 말이죠, 대학생은 이것의 한 70% 이하면 국가장학금을, 국가장학금을 주는 재단이 있죠, 국가장학재단. 국가장학재단에서 대학생에게

520만원까지 줘요, 장학금을. 언제까지? 8학기까지. 그런데 이 장학금은 70% 이하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200% 이하에게 다 줘요. 이 사람에게는 67만 5천원까지 줘요. 그럼 200%는 얼마나. 1인당 1억 1천만원이예요. 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사는 사람이 국가에 장학금을 신청하면 67만 5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하에도 세자녀 가정은 67만 5천원이 아니라 450만원까지 줘요, 각각의 자녀에게. (이 정보를 매뉴얼화해서) 그렇죠. 그걸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런 서비스가 중요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도 고려되어야 해요.” “이미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분야에는 프랑스의 정보문화센터라고 있어요. 프랑스청소년정보문화센터. 이걸 뭐 정보 센터라고도 부르고, 프랑스 파리에 가면 정보 센터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제일 먼저 가면 로비 같은 데에 구인 구직 스티커들이 짝 있어요. 어디에서 사람을 구하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상담하고 싶다, 하면 은행 창구처럼 창구가 있어 가지고 번호표 받아 가지고 자기가 상담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주 하는 상담의 내용은 계속 정리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요, 백과사전처럼. 그럼 책이 한 열 권쯤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군 복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직업의 가짓수에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짝 정리를 해서 매 년, 매 년 그것을 업데이트하고 그걸 자기들이 계속 리플렛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가져가게 해요. 그리고 그걸 총 정리해 가지고 고등학교에 1년에 한 번씩 책을 주는 거예요. 그럼 도서관 같은 데다가 놔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까도 말했듯이 기술병으로 가는 방법이 스무 가지도 넘을 수도 있어요. 기술병 통해서는 나중에 나오면 그 분야에 취업하는 기술병도 많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런 데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보 안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대부분 알음 알음으로 가르쳐 주거나 가족 중에 누구 좀 그런 분야에 있으면, 야 이왕이면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나 친척 중에 그래도 좀 정보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면 덕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그렇죠.”(복지로에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문제는 복지로에서 그걸 하는데 복지로에 들어가서 서비스 신청해 본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복지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백 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지 않죠. 일하는 사람이나 알지.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한 번도 자기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한계가 있어요.”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주 추진원은 상담복지개발원을 위주로 한 서비스이나 이러한 상담 중심 서비스가 다양한 청소년복지 노력을 추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처음에는 상담센터였잖아요? 아니면 상담소. 그랬다가 이걸 상담지원센터라고 했죠. 이름을 바꿨죠. 그러다가 상담복지센터로 또 바뀐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CYS-NET을 하려고 보니 상담원들은 계속 말로만 하려고 하고... 말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병원을 치료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하다 못해 돈이라도 준다든지... 이러니 복지를 강조하면서 복지사를 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상담사)이 메인이고 이 사람(복지사)이 서브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서 배겨나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상담으로 오는 사람들은 20년도 근무하고, 30년도 근무하잖아요. 급여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름은 바뀌었지만 사실은 상담하는 사람들이 메인이라고 봐야죠. 자원 연계나 이런 것보다는 말로 하는 데 익숙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모든 복지서비스를 상담의 시각에서 보려는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졌어요. 그런데 복지서비스를 상담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정 전에 충분한 개입서비스의 마련과 목적, 실천 방법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타부처 사업과의 차별화, 추진체계, 추진방법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처음에는 교육적 지원인가로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 교육적 지원이라는 말이, 교육적 지원인가 특별 지원인가 아무튼 그랬었는데… (교육적 선도?) 네, 교육적 선도. 교육적 선도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이걸 다분히 당시의 000연구원에서 청소년 연구하는 팀의 박사가 누구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분들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한 거예요. 왜 이걸 집어넣었냐 하면 청소년들을 예를 들면 보호처분을 해. 그러면 이 보호처분 중에서는 일부는 강제력이 있는 거지만 일부는 그냥 집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강제력이 별로 없죠. 그리고 또 일단 보호체계에서 1호, 2호, 3호 이렇게 해 버리면, 말은 애네들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경찰은 다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법 쪽으로 뭔가 하는 것은 조금 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법 처분을 받기 전에 아이들을 뭔가 케어 했으면 좋겠어서 넣은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교육적 선도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뭐랄까 선도라는 말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이걸 지원인가로 바꿨죠. (예, 회복적 지원인가 예방적 지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죠. 다 바꿨어. 그런데 아직도 별 내용이 없어요. (예방적, 회복적 보호 지원) 그런데 이 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형사 처벌로 가기 전에, 보호 처분으로 가기 전에 뭔가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별 실천은 없을 거예요.”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것도 차라리 보호법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 보호하고 복지가 어떻게 나뉘지는지는 모르지만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복지보다는 보호 쪽이 더 맞지 않을까. 비행이나 이런 거, 회복적인 이런 것들이 그게 복지일까? 아니면 보호 쪽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회복시설 있잖아요. 그게 보호법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차라리 이 참에 보호의 개념을 지금, 오랫동안 지금 보호법이 그런 식으로 유지가 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그 네 개 이외의 다른 보호까지 포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개로만 맞춰서 하니까… 그래서 이게 복지일까? 보호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호법에는 그 네 가지를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 쪽에 와 있는 것 보단 저 쪽에 들어가 있는 게 사람들의 이해도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렇게 법을 잘 모르는 상태라서 일반적인 생각에서…”

법실천 강화,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조항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내용이 누락된 경우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그런 거는 이제 법 조항을 보면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 인데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전체적으로 아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법 조항도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구체적인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없어서 그럼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정말 진행이 되는 거지? 그걸 잘… 그러니까 법이 촘촘하 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앞뒤가, 아귀가 딱딱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느낌.”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들을 법제화해서) 하나씩 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굳이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는 거예요. 조항으로 딱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뒤가 없는 거야.” “또 저는 법이 어떤 법이든 완벽한 법은 없다고 그러는데 좀 이런 복지에 관한 법은 더 촘촘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해서, 많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법이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2장 청소년 우대에 관한 사항을 능력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고 대상 연령을 24세 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우대증은 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해야 한다고 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가 뭐야 해야 한다고 해야지, 그 다음에 시행령 1조 2보면 면제나 할인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을 9세에서 18세로 해놨어요. 이거를 그냥 9세에서 24세로 하고 두 번째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대학생까지 한다 뭐 이런 게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24세로 하 는 게.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아예 24세로, 기본법하고 똑같이) 네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렇게 해도 되고, 사실 미국같은 경우는 학생증만 있으면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학교밖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아예 초중등부 말고 대학…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24세로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내용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 내용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차별화되는 내용을 조항에 명시하거나 삭제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건강검진은 사실은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게 인제 사실 학교밖 법 쪽에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복지 전반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복지는 어쨌든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물론 거기서 대상을 꼭 집어서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이 나오지 않았을 적에는 그게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그 법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는 그 쪽은 좀 그 쪽에 가서 그 법이 좀 탄탄해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사실 청소년 중에서 학교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와 있는 것보다 저 쪽에 가서, 학교밖 쪽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하면 이 부분이 좀 더 빛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학교 다니는 애들은 의무적으로 다 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학교밖 아이들이 건강검진 잘 안하려고 하잖

아요. 자퇴자 파악도 잘 안되고 파악된 애들도 귀찮고... 50인 사람은 건강이 걱정이 돼서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고맙다 하겠지만 애네들은 제일 그래도 건강할 때잖아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도 잘 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애를 많이 먹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그거를 억지로 억지로 막 이렇게, 양쪽에 성과가 나니까 그걸 하는데..." "그거는 의도에 비해서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면 애네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 에다 더 법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의도는 좋은데 실제 그렇게 많이 안했을 것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했다고 들었었거든요."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좀 여기서 다뤄주는 게 맞는데 있으면 오히려 그 쪽에 가 가지고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내용은 거기에서 전부 다 다룰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 법도 위상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적어도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이면 교육, 복지면 복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져가주면, 그러면서 사실 일반 청소년일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 이외의 것을 거기다가 좀 애네들한테 특별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청소년일 때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안하지만 애가 학교밖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받는, 받아야 될 것들을 거기에 주로 넣는 거죠."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내용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건강검진 자체만이 아닌 그 이후의 follow-up에 대한 내용이 강화될 필요성 또한 제시되었다.

"follow-up도 있어야죠. 예를 들면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심각한 병이 있다가나 했을 적에 이제 개를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단순한 학교밖이나, 그래도 부모가 관심이 있고 학교밖인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조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또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보험이라도 해 주거나, 만약에 그런 보험이 없는 애들은. (어떤 보험이요?) 건강 보험, 지역 건강 보험. 예를 들면 제대로 된 가정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차라리 뭐 예를 들면 어떤 쉼터라든지 아니면 수련관이든지 아예 기관에 개네들을 편입시켜 주는 거예요, 아예. 예를 들면 조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그럼 애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랬을 적에는 그런 어떤 공공 기관에서 애네들을 어떻게든 해서 보험을 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나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면 그게 낫지. 건강검진을 받아서, 그 다음 next는 우리가 없잖아요. (돈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험금을 내 주고 그렇게 좀 해주면... 요즘에 우리나라 보험이 웬만하게 많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모자라는 게 있으면 특별히 특별 지원을 해서 받는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최근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내용에 정신 건강 보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으며 보다 심화된 정신 건강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었다.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많기는 한데… 저는 청소년 정신 건강이요.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파트가, 신체 건강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관련된 게. 지금 우리 대학에 보면 상담실에 굉장히 위험 수위가 높은 상태로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럼 이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나라의 특징, 가정에서 대학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하게 해 줄게. 그러니까 이걸 애들이 더 억눌리고 막 이렇게 표현도 못하고 했던 말이죠. 정신 건강적인 측면이 저는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고.” “정신 건강적인 측면이 상담적인 것 가지고 안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겠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우리가 상담이 있는데 사실은 진짜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제가 상담실장을 한 4년 했는데 그 때 필요한 게 뭐였냐 하면, 전문상담원 가지고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정신과 의사한테 의뢰해야 되는 상태가 많은데, 우리가 그런 예산이 없어서 막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막 졸인다고 해야 하나? 애가 언제 막 사고를 낼지 모르는… 다행히 그런 사고가 안나긴 했지만, 나는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너무 심한 애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제 입장에서 어 이거 만약에 이런 사건 사고가 나봐.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한테… 그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보다는 그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정신 보건 진짜 중요해요.”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CYS-Net)의 낮은 실효성을 보완하는 방안이 고민되어 법체계에 포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안된다고 다들… 그런데 이게 내가 보기엔 완벽해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봐서는 이게 뭐 어떻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잘 되는 데가 가끔 있어요. 잘 되는 데가 가끔 있고 대부분은 잘 안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만질 수 있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다른 걸 못해요. 거기다 완벽해서 손댈 수가 없어, 이게. 고칠, 손 볼 데가 없어요, 이게. 서류상으로나 겉으로 봐서는 뭐 특별히 내가 여기저기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차라리 이게 뭐 잘되는 데도 있지만 잘 안되는 데가 있으니 어떻게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런 얘기는 잘 안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지원과 중복될 수 있으나 현행 지원 내용이 많지 않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별지원은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지방에서는, 어느 지자체에서는 중요한 청소년 사업이에요. 그 정도로 없다는 거지, 그 지역에는. (이 지원 대상자가 수급자랑은 또 조금 다른 건가요?) 여기 보면, 특별지원하면 그거(기초생활수급)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금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이게(기초생활수급)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죠. 겹칠 수 있어요. 겹칠 수 있는데, 겹쳐도 우리가 보장을 많이 안해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그런 거 나오면, 가끔 신문 같은 데 나오면 뭐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뭐 어디서 몇 만원, 어디서 몇 만원 받잖아요. 우리 밥값이 얼마예요. 예를 들면 충분히 살기에, 정말 아주 풍요롭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살 만큼 준다 그러면 나는 중복되는 걸 결사반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금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중복되어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나는 들구요.”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급성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포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어려운 사람은 많거든요. 오히려 사각지대가 여기에 대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갑자기 어려워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랬을 적에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사각지대… 그런데 그 사각지대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성하고 급성은 또 달라요. 갑자기 어느 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청소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물망이 터지는 거지. 빠져 버린단 말이에요. 몇 명 안된다고 자꾸 넘기고, 넘기고 하게 되면 결국엔 촘촘하지 않게 되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이렇게 돼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야. 너 강남에 40평 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는 내가 강남의 40평 대, 50평 대 아파트에 사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생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예를 들었지만… 사각지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홍보를 해서 당신들도 자격이 있다, 받을 수 있다, 라는 걸 이렇게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15조의 서비스 신청 권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여기 보면, 여기 15조에 신청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웬만한 사람 다 들어갔는데, 그냥 문득 생각했는데 이웃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만 하게 되면 또 발견을 못 해.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웃이라는 표현을 썼고, 하나는 보호자가 아닌 친척이요. 보호자만 되어 있잖아. 그래서 보호자가 아닌데 내가 친척 이런 사람도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신청하는 게 친척이 없고. 그런데 내가 이웃이라는 표현 더 이상 못하는 게, 주변에서 애를 아는 사람인데…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이 사람이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웃을 넣는 순간 이게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또. Everybody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표현을 해야 될 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대로 놔둔다면 친척 정도를 또 더 포함시켜 주면 어떨까. 신고의무자를 조금 확대하면… 확대해보자.” “교원 있는데, 아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도 있어. 여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 말고, 예를 들면 방과후 뭐 방과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없죠. 안보이잖아요. 방과후 교실 교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웃이 안되면 애를 만날 수 있는 누군가라도 여기다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방과후 교사. 진짜 저 사람 없다. 종교, 종교 기관의 종사자 이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이웃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 포함한다, 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여기 친척, 종교기관 종사자, 방과후 교실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해주면, 어쨌든 애네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하면… (쉼터 선생님들도 이거에 따르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청소년지도자.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여서 이견 괜찮은 것 같아요. 방카는 되는데, 방과후 교실 교사, 학교에서 하는 거. 그 사람들은 방카 그게 어려울 거야. 그런데 더 많이 만나잖아요. 넣어 줘야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죠.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너

무 청소년 업무로 한정돼 있지 않나요? 이것도 한정하지 않아야... 만약에 이웃을 안 넣으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동사무소 가 가지고 애 좀 어떻게 봐 줘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 경찰도, 경찰공무원이야 그냥 공무원. 공무원으로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는. 다 빼고 그냥 공무원으로 하면, 청소년 업무라는 말 빼고 공무원이면, 확대하는 쪽으로.”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16조 1항에 상담 외 직업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할 필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그 다음에 16조 1항에 보면,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 상담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설치,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상담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 훈련 같은 거 그렇게 포함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가정 복귀뿐만 아니라 사회 복귀도 이 앞에서 얘기 했잖아요. 가정하고 사회 복귀 얘기하면서 상담만 자주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얘기.”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18조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18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하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중도입국청소년인데 나는 초점이 2번에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국제 결혼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예요. 이게 다문화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애네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적어도 한 쪽은 부모가 일반 한국 사람이고 이 쪽보다는 오히려 이 두 번째에 들어 와야지 이게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도 잘해, 한국에 와서 교육, 약간의 뭐... 외모에 차이가 있는 정도, 이걸 또 다른 데서 해결을 하니까 애보다는 이 쪽에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과 관련하여 22조 ‘이하 상담원’ 이 아닌 ‘이하 상담복지원’으로 표현하여 복지 내용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이 강조되었다.

“그 다음에 22조에 보면 22조 이하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이하 상담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법에서 조차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난 이걸 안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하를 어떻게 청소년상담원으로 해요, 이거를.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안 줄이고 그냥 썼으면 좋겠다. 조금 길어진 건 하겠지만... 만약에 정말 꼭 줄여야 된다면 상담복지원. 그게 낫지 이걸 아닌 것 같아요.”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역별 정확한 설치 기준을 제시하여 수요에 따른 시설 확충의 당위성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이 강조되었다.

“그 다음에 31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쉼터 있고 자립지원관, 치료재활센터, 회복지원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 다음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립지원관 같은 경우에 별로 없죠. 회복시설도 그렇고 치료재활센터도 없잖아요. (치료재활센터가 디딤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 하나 더 생긴다고, 대구 쪽 어딘가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아예 옆에다가 설치 기준을 좀 넣어주면 어떨까. 우리가 문화의 집, 수련관은 있잖아요. 꼭 그렇게 안되더라도 법에서 조금 압박을 주면… 사실은 문화의 집도 설치 기준 강화 안됐어요. 하지만 그 기준이 있으니까 확장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뭐 쉼터도 그렇고 자립지원관 이런 것도 그렇고 청소년 인구 비율에 따라서, 일정한 청소년의 비율이 있으면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처럼)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조금 이 옆에다가. 많은 지역마다. 괜히 또 저 쪽 엄한 지역에, 정말 밭에다가 그런 데 하지 말고. 애들이 정말 일을 하면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이런 거는 대도시 중심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대도시에 일자리가 있지 무슨 읍면 지역에 일자리가 있겠어요. 치료재활센터는 어떻게 어디다 세워도 상관이지만 자립지원관, 쉼터 이런 거, 회복지원시설도 거의 마찬가지야. 이런 거는 그런 거 기준을 해줘야죠. 설치 기준 하는데 이거는 정말 논이나 밭에다 세우지 말고, 산 속에도 세우지 말고, 예를 들면 대도시, 인구 밀도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데에다가 세워야 된다. 이거는 오케이, 네 마음대로 세워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몇 명 정도, 예를 들면 뭐 가솔 청소년 비율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수요를 조사를 해서 수요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 “그리고 자립지원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요. 이런 거, 자립지원관 저기 서울에, 있긴 있어요. 인천에 있고 서울시에도 지금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국립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시청에서 해요. 인천, 서울 하는데 그거를 중앙 부처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는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청소년이 많았다가 그 지역에 청소년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게 하고 굉장히 좀 flexible 하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자립지원관 하는 데 가봤거든요, 오픈 안한 데. 그냥 빌라 얻어서 해요. 빌라 얻어 가지고 하나는 사무실같이 쓰고 하나는 방을 하나씩 줘요. 그래 가지고 방 세 개고 큰 방은 둘이 쓰고 작은 방은 하나씩 써요. (수련관 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에요. 그리고 생기지도 못하고 애들도 안가고 주민도 싫어해요. 서울시에서 하는 데 가봤더니 거기는 그런 집이에요, 빌라예요.”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중장기 쉼터, 자립지원관 이용 기관 확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내용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다음에 기간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기간.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 혜택 받은 애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혜택 받지 못한 애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게 어쨌든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는 애네들을 하다못해 지원해주는 거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애들한테 돈을 받아요. 한 달에 10만원이고 얼마고. 그럼 이걸 모았다가 나중에 나갈 때 주는 거야. 돈을 받아요. 보통 자립지원관 애들은 이제 나이도 있고 일을 하는 애니까. 알바라도 하면 한 달에 10만원은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애네들이 나중에 나갈 때 시드머니가 되니까 애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 우리도 지금 뭐 그런 걸 다른 데서 한다고 하는데… 방을 구하면, 한 달에 30만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적어도 한 15만원은 지원해주는 이런 식도, 자립지원관이 너무 예산이 부족하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거(치료재활센터)는 확대가 안돼. 이거는 그렇게 오래 안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헛터도 yes and no야. 어떤 애들은 있는데, 중장기는 가능한데 단기는 좀 어려워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포함되는 청소년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식으로의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오히려 요 기초생활보장법, 나 이게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보면 어떤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가만히 보면 기초생활, 그런 얘기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수급자 중에는 일부러 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대학생들도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애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애는 거기서 받아서 누리면서 그 이상 안하려고 하는 거죠. 멀리 봤을 때는 개네들한테도 손해예요, 사실은. 그런 애들 많아요, 있어요. 그게 현실이라니까. 어느 게 더 좋을까? 내가 뭐 하러 일을 해? 일 안해도 난 그 정도는 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제9장 보칙 37조 비밀 누설의 금지와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칙이요, 보시면 37조에 비밀 누설의 금지. 그래서 비밀 누설하면 안된다 라고만 했어. 그 다음에 뒤에 이거 없어. 그래서 안되는데 누설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이제 어디 뒤에 있는 벌칙에 있어요, 그게. 벌칙에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 일 년 이하에 벌금이야. 아니면 징역, 그 다음에 징역, 벌금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걸어야 될 게 저기 자격증 정지같은 걸 걸었으면 좋겠어. 아니 돈 하고 그거만 하면 안되잖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애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상담사가 됐든 지도사가 됐든 자격증 정지와 같은 것 하고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37조에서 뒤에 벌칙이 나오긴 하는데 벌칙에다 이걸 넣어야 될 지 이거를 아니면 시행령 이 쪽에다가 넣어야 될 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했으면 좋겠고 45조에 과태료가 있어요. 너무 싸. 때가 어느 땐데 500만 원이야. 300만원 이하 뭐 이런 거야. 이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물가 상승이 얼마나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9장 보칙과 관련하여 효율적 서비스 연계를 위한 사례 개인정보 공유를 허가하고 원활히 하되 비밀 누설 시 보다 강력한 처벌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개인 정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라 애를 도와주려고 필요한 거지 애를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져야 된다고 이게. 비밀 누설이나 이런 게 세져야 된다고. 이게 1년 이하 징역 뭐 천만 원, 이 정도 가지고

안된다는 거지. 자료가 넘어 와야지 시간이 단축돼요. 그리고 본인도 한 얘기 여기서 다 했는데, 여기서 또 해야 되잖아. 싫어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상황에, 애가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나는 당연히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보를 본 사람이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이거는 자격 정지, 내용에 따라서 자격증 정지부터 자격증을 없애는 것까지, 취소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이런 게 약하잖아요.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자격증 보수교육을 한다든지 이랬을 적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이랬을 적에 최고는 징역, 동시에 갈 수도 있다. 자기 자격증도 취소되고 그 다음에 징역도 살 수 있다. 이런 아주 센 걸... (중요한 정보는) 공유를 해야지. 그래야지 시간도 단축되고 애도 힘들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낙인찍고 애네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자료, 개인정보보호법이 나는 쓸 데 없이 딴 데서 너무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보지도 말고, 처벌받을 일도 없고, 우린 상관도 안하고... 그런데 또 다시 조사해야 돼. 이름이 뭐고, 이거 다시 조사해. 말이 안되잖아요. 또 해야 되잖아. 그럼 말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정말 필요한 정보들이 나오질 않아요. 한 번, 처음에 정보를 얻을 때 그 사람이 꼼꼼하게, 상세하게 한 번 딱 끝내는 거야. 그래야지 애가 다시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거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다음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거고 될 수 있을 지 없을지 몰라요. 이런 거를 바꾸는 건 가능해. 자격증 취소 이런 건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쪽에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청소년쪽 지도사, 사회복지사 이런 데 넘어오겠지만 그러면 뭐 의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다 그런 권한은 주되 그 사람의 어떤 그 비밀 누설 시의 어떤 처벌이 강해져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가야 할 것 같아요.”

법학을 전공한 청소년관련법 전문가 C박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법적 체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법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및 역할을 우선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체 체계를 봤을 때 총칙 규정이 있고 그 다음이 청소년우대예요.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건 지원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일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어떤 영역들로 나가서 할 지. 그런데 그게 아주 선행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언적인 규정들을 제일 먼저 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각각 규정에 조금씩 묻어나 있긴 해요. 뒤에 뭐 지원 체계나 이런 게 있는데 이 2장에서 그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을 위해서 어떤 책무가 있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먼저 설시가 되고 다른 법률들은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영역들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계 보면 복지지원법 체계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만 막 끼워 넣기로 가다 보니까...”

관련하여 2장에 국가와 지자체 책무 상세를 상세히 규정하고 → 일반/위기/특별청소년 영역별 지원 내용 → 기관 및 시설 내용 순으로 법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가 이 법을 다시 만든다면 2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부분들을 더 상세히 규정하고 그 4장인가에 있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거기에 넣겠어요. 거기에 넣어서 통합적으로 인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분을 영역별로 나눠서 어떻게 할 지. 복지지원, 뭐 생활지원, 의료지원 이렇게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거 영역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왜 기본계획에는 다 있잖아요. 그런 형태들로 딱딱딱 나오고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부분, 특별청소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좀 기술이 되면…” “통합지원체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CYS-NET 정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에 하부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청소년에 대한 지원인데 그 지원이 영역들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건강지원이라든지, 뭐 생활지원이라든지 학업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영역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들을 3장이라든지 이렇게 뒤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 영역’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씩 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 우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건강보장에 대한 사항이 열거되고,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이나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 장에서 통합적으로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단체나) 시설에 대한 부분. 그렇게 가면 이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사람도 딱딱딱 뭔가 체계성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실 예방적, 회복적 지원하실 때 CYS-NET 활용하겠다고 주장하셨잖아요, 여가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실 거면 그거 앞에 국가의 책무 그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담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한 그냥 연구기관이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뒤에 보면 회복지원이나 예방지원 부분은 어떠한 강제력도 있잖아요. 보호자한테 의무적으로 하거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뭔가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나 임무 부분으로 가야지만 더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잖아요.”

제2장 청소년 우대 등의 ‘우대’라는 용어는 → ‘배려’라는 용어로 용어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런데 제가 딱 봤을 때 제 2장이 청소년 우대? 뭘 우대하지? 사실 요즘에 우대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배려. 장애인도 요즘에 우대라고 안하고 배려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약자 배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좀 순화해서 쓰거든요. 웬지 청소년이라고 하면 원래는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특별히 해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인권에서 배려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관점으로 용어를 좀 다르게 쓰거든요.”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 실행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위기청소년 지원 부분은 사실은 실효성 문제가 제일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13조 2항에 보시면 상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게 강제거든요. 의무 규정이거든요. 사실 의무로 할 수 있는 근거, 지위나 권한이 전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거를 명문화 해놓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구동이 전혀 안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머지 내용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전혀 없

어요, 언급이.” “특별지원 지자체에 의존하고 계신 것 같던데요, 애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좀 강제적으로 너네 지자체에서 이런 특별지원 대상해라. 그걸 실적으로 잡고 카운트를 하니까 뭔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 마치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실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의 기존 지원 서비스 중복 제시로 차별화 부족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한번 제시되었다.

“특별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분도 이 특별지원 대상이 사실은 위기청소년이라고만 해놓고 특별지원은 사실은 다른 부처… 보건복지부나… 너무 또 여기는 열어놔어요. 청소년활동지원, 직업훈련지원, 학업지원은 사실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을 또 여기는 너무 펼쳐놔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그 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보면 이 법에 따라서, 규정 때문에 진행된 것 보다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다양한 서비스들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체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용 중복되게. 예를 들면 생활지원… 법무부 꺼는 여기 직업훈련 지원, 생활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립관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벤치마킹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혜를 받는 아동의 입장에서는 뭐 지원해주는 부처는 많은데 실제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차별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수혜 대상이 되면 여기에서 누락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가 많이 지원해준다고 서로 얘기는 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법령 체계인 거죠. ”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실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금 보면 이 14조의 내용이 지금 시행령 7조에 규정돼 있거든요. 대상이 어마 무시하게 많아요. 초중등교육법 상의 대상, 보면 보건복지부의 대상, 이렇게 되게 많이, 특히 뭐 소년 사법 대상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소송 비용 지원해주는 것까지 있는지.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여가부에서 소송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열거는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규정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 하나도 제대로 구동되거나 구현되지 못할 규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게 제대로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복지지원법의 특화된 영역으로서의 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사실 지금 여가부가 제일 메인으로 삼아야 되는 건, 저는 사실 16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 가출 예방 보호 지원. 이거 아웃리치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오는 애들만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 되게 떨어지니까 이제 지금 대검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들 받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확보되어 있는 대상을 인계받는 형태로 자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중에서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출청소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특별한 그 뭔가의 노하우들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제일 살아남으려면 사실 16조의 역할을 제일 충실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교밖 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일 강조된 게 이것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가부가 보건복지부가 하지 않는 영역까지 우리가 다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게 학교밖 아이들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청소년 문제의 가장 출발점이자 가장 심각성을 제일 띄고 있는 곳이 바로 가출 영역이거든요. 제가 만난 아이들이 대부분 비행 시작 시점이 가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비행 친구 사귀고 성매매, 뭐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서 다 이렇게 되는 진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계의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계 규정은 딱 한 규정으로 끝나요, 그냥. 하나의 규정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많이, 규정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청소년대책 만들 때, 여가부에서 만들 때도 그걸 제일 주장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특화해라. 그게 학교밖이다. 학교밖 애들 아웃리치 적극적으로 가고 그 아웃리치 할 수 있는 상담사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금 보면 석사 과정 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일하다가 다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을 특화해라, 라고 되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안나오잖아요. 한 센터에서 1년에 뭐 열 몇 명 아웃리치 된대요. 개가 여러 번 오면 여러 번 상담 실적이 잡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센터에 가출 청소년으로 자기가 아웃리치해서 데리고 오는 애들은 몇 명 안되는 거예요. 이 영역을 하고 싶지만 힘드니까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영역을 개발해야지 제가 볼 때는 다른 법률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특화된 법률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확대 모드로 가실 거면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더 촘촘히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뒤에 예방·회복지원하고 연결되잖아요. 이 부분이 더 세세하게, 기본 계획에 있는 내용들 더 촘촘히 세세하게 규정들을 마련해야지만 뒤에 꺼하고 연결돼서 죽죽 내용들이 더 구체화되어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상태의 규정만으로는 전 좀 사후지원, 필요한 지원 그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경우 지자체 상담 서비스를 통한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이거를 의무 지우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대상들을 자기네들이 받아서 민간 상담 센터나 이런 데에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안되는 영역들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경찰이 협조하겠다 해서 훈방 대상자들은 이렇게 연계 받는 걸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사안이 상담 센터에 아이 개인정보가 유출 된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 자살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진짜 큰 파장이 일어날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어떠한 관리 주체도 없잖아요, 지금. 인계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의 책임을 고스란히 상담 센터가 져야 되는 부분. 상담이 지자체에, 관련 기관들에 인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법의 취지는.”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들은 이미 앞에서 너무 많은 서비스나 상담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탈, 비행 저지르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경찰 단계에서부터 가는 데가 그런 상담 센터 이런 데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를 다시 지역사회에 돌아와서 또 한다? 애들한테 재비행 예방의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본 거죠. 이제 특화해서 이걸 하겠다는 건데 취지는 좋은데요, 저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져야 하는데 지자체한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사회복귀적응을 위한 활동들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지자체는 일반청소년들 돌보기도 너무 바듯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무턱대고 그냥 보낸다고 이게 제대로 구동될까.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죠.” “사실은 지자체에서 돕겠다고 하면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가 성인 될 때까지. 사후관리 서비스 하겠다면. 6개월은 소년법에서 보호 처분할 때 기본 원칙이 6개월이거든요. 지자체가 이 아이들 잘 관리할까요? 아무런 근거 없이?”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 법무부의 비행예방정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통고, 통고하면서 이제 수강 명령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수하게끔 명령을 내려요, 법원 단계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강제성도 없는) 이걸 지자체에 시키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조정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법무부가 지금 가져 왔거든요. 비행예방정책이에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하는 비행예방정책 하고도 이게 중복돼요, 대부분.”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지원후견인 서비스 조항(21조)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차라리 저는 여기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21조가 더 강조됐으면 좋겠어요. 보호지원후견인. 사실 일탈, 비행청소년이나 사회생활 적응 못하는 애들 대부분 보호자가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대신해줄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눈이 있는 거죠. 이것도 또 세부 규정은 령에 두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그렇게 세부적이지 않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정작 메인으로 뉘야 될 내용들은 되게 끄트머리에, 되게 그냥 선언적으로만 규정해놓고 실제로 해야 되는 내용들은… 없어도 될 것 같은 내용들은 엄청 길게 장황하게 적어놓고. 그러니까 이 법이 왜 하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단계에서 해야 된다고 되게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가족관계 회복이나 사회적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에서 눈이 돼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돼야 된다, 라고 했지 사실은 상담 뭐 이렇게 센터, 수련 이런 것들은 애들이 학교에서부터 너무 많이 했던 것들이잖아요.”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대상 발굴 및 서비스 방안 마련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저는 여가부가 다른 부처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 성과 관련된 부분, 여성, 여성과 관련된 부분, 성적 지향 부분. 이런 것들은 못 건들이잖아요. 그거는 확실하고 이거를 전체로 가족단위로 뭔가를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건 쉽잖아요, 여가부가.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이 지역 단위로 들어갔을 때 학교밖 아이들이라든지 이렇게 있잖아요. 사회에 노출돼 있는. 학교의 밖에 있다든지 아니면 사법 단계에서 끝나고 온 대상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역사회에 다시 들어온 애들.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사후 관리 단계에 오는 애들, 그런 애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여가부가 주력해서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후관리 부분은 발굴하면 좋은데 발굴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 없어요.” “쉼터의 노하우가 되게 크잖아요, 이걸요. 그런데 이 쉼터를 특화할 수 있는 쉼터들이 되게 많거든요. 장애인의 경우에 장애인 재활 치료 끝나서 이제 그 쪽 보건복지부 영역의 서비스가 끝난 대상들을 지역사회에서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소년 사법 단계에서도, 소년 사법 단계에서 소년원 출원한 애들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단기간이에요. 뭐 6개월,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이들은 거의 지자체에서 방치되거든요. 그런 애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쉼터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6호 처분 시설이든 1호 처분 시설 아이들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할 대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사실 여가부에서 주력해서 해 주면 특별이나 예방·회복지원 이 쪽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돼 있죠.” “대상 발굴도 쉽잖아요. 그 쪽에서 넘겨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 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과 관련하여 특화된 쉼터 개발 및 서비스 배정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사실은 쉼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대상 애들이 지금 많이 가는 것 같고 오히려 정말 절실하게 쉼터가 필요한 애들은 갈 곳이 없어요. (숫자가 차서…) 그쵸. 그리고 대상들도 받기 까다로운 대상들이니까 이제 안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경기여성개발원 거기서 중심이 돼서 그 박사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연구를. 그걸 특화하는 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통합 체계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장애와 관련된 특화 쉼터, 뭐에 대한 특화 쉼터,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특화 쉼터 이런 식으로 나눠서 경기도 안에서 그거를 큰 프레임을 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에 대한 이제 딱 왔을 때, 그 대상이 왔을 때 애를 어디로 보낼 지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그 메인 센터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연구를 하고 계시고 저번에 자문 한 번 갔었거든요. 그 내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여가부가 이걸 해주면 좋잖아요, 여가부가. 경기도가 할 게 아니라 여가부가 어떤 대상이 어 여기서 끝나서 딱 왔어, 애를 어디 보내지? 어 우리 쉼터 여기에 이게 특화돼 있어, 여기로 보내 줄게. 그러니까 서비스 수혜자가 될 사람들에게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움직이는 쉼터가 아니라 애들의 기호에 맞는 쉼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쉼터는 되게 잘 되는데 안되고 있는 쉼터는 진짜 어려운 이런 거니까 이게 좀 골고루 잘 활용될 수 있다면… 이제 쉼터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늘었으니까 이제는 좀 질적인 향상이 됐으면 좋은 거죠.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 법에도 좀 그런 내용들이… 청소년복지시설을 그냥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이렇게 하는, 모니터링 하는 형태로 가지 말고 각각 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서 요런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이 쪽으로 쉼터에 지원서비스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거를 방향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여가부가 해주면 진짜 잘하는 거겠죠.”

3. 추후과제

미래지향적 법 정비를 위한 추후과제로 A 교수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생활을 반영한 전문적 자립지원 서비스 가능 시스템이 마련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문화된 담당 요원의 사후관리를 통해 자립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그렇듯 국가의 정책도 현재 아동이나 청소년의 생활이 어떤가, 자립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방향이 내가 보기에는 미래지향적이라고 나는 봐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자립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복지지원법은 자립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까 말하는 양육시설의 경우는 자립 담당자가 있어요. 자립지원 요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년 간 사후 지도를 의무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도 예를 들면, 서비스를 받고 나간 사람들의 상당수가 쉼터에서 나갔다고 해서 우리 친구가 자립된 것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쉼터에 갔을 수도 있고. 쉼터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취약 계층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 제대로 서비스 안하면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막 찾아다니면서 서비스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번 쉼터에 왔던 친구들에게 계속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왜? 들어올 때 마치 영수증에 정보이용동의서 쓰도록 하듯이 너 이 서비스 받는 데 정보이용동의가 필요하다. 할 때 그 사람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거나 이메일로 정보를 보내주는 것에 동의하느냐, 누가 뭐 반대한다 그러겠어요. 동의한다 그러면 그 때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러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중단하는 식으로. 이런 사업들, 사후 지도 같은 것을 강조하고 그 직원의 어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역량강화에 관련된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현재 없어요.” “두 번째, 청소년의 경우 요즘 자립을 강조하는데 자립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있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주어지는데 쉼터에는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좀 챙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한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수준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저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복지지원법을 만들어 가지고 혹은 개정해 가지고 뭔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때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일단 서비스 기준을 정해서 이 서비스가 헌법 상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주는가. 수준 유지,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동복지든 청소년복지든 현재 상황, 현재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방향이. 그 다음에 특히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요즘은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 대해서 국가가 수당도 주고 취직하면 무슨 공제도 해주고 행복주택도 주고 이러는데 그 청년 내에서도 가장 취약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동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수준의 어떤 서비스, 어떻게 보면 서비스 기준을 정하는 거죠. 서비스 기준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헌법상에 맞아야 된다.”

정보화 기술의 확산 및 발달에 발맞춰 웹 기반 정보화 서비스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신설하여야 한다고도 강조되었다.

“그 다음에 웹 기반 서비스라든지 예를 들면 정보화 관련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신설되어야 해요.”“이런 정보 서비스를 강화해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없는 건 아니예요. 활동진흥법에… 자원봉사센터가 했던 거 있잖아요. 정보센터. 그걸 지금 활동 무슨 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면 허접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컴퓨터도, 상담복지센터도, 어느 곳이든 쉽게 말해서 웹 기반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웹 기반 서비스는 지금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는데, 웹 기반 서비스를 그대로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어요. 이 쪽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좀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프랑스의 사례가 있으니까…”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대상을 24세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추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다른 법에서 이제 그들은 다르겠지. 왜냐하면 또 이거를 너무 또 늘려 놓으면 성인이라 그러면서 투표하고 참여하고 다 한다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그런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9세에서 24세를 바꾸지 않는 한 24세까지만 가지고 가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24세면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여력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잘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눈을 돌려야지 여기까지 늘리면 여기 있는 애들까지 못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일단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세요? 컴퓨터에 요즘 20대도 많이 온다는 거. 그래 가지고 어떤 컴퓨터에서는 여가부에 전화까지 온 거예요. 애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24세니까 받아야 되는 상황이… 그리고 24세라는 나이도, 우리가 법으로 24세를 했지만 24세 하고 한 달 차이의 25세 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청소년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컴퓨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내 성적 지향 배려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저는 이제 지금 아동권리협약 관련해서 내용들을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의 법체계 영역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 아이들 성적 지향 부분이에요. 성 소수자라든지 다른 성의, 제 3의 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3의 영역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나 지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여가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보강이… 지금 그래서 소년원 쪽에서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같이 생활하면서의, 민감한 상황이라든지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여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가이드나 매뉴얼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각 컴퓨터에서는, 아이들은 실제로 인터뷰해 보면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의 규정들은 이런데서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으면 좋겠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단순 검진이 아닌 환경권 접근을 통한 내용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건강권과 관련된 얘기도 단순히 뭐 이렇게 건강검진이나 지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환경권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뭐 아동권리협약도 요번에 권고사항들이 온 거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느냐, 아이들 교실 환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슴기 살균제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아직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진 않거든요. 여기에서도 영역 중에 건강권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의 건강권의 접근이 환경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담기면 내용이 좀 더 발전적으로, 다른 부처의 법 보다는 발전적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Ⅶ.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방안에 대한 제안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중앙·지방 단위 청소년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사항 명시(독일의 청소년청 사례 참고)
- 외국국적 청소년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 포함 여부 고려 필요
- 청소년복지 관련 정보관리의 원활성은 확보하되 누설시 처벌을 강조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 필요
- 청소년복지 정책추진을 위한 부처간,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협력체계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으로 원활한 청소년복지 서비스 제공, 연계의 근거 마련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 사업 개발, 실시(미국의 비행청소년, 퇴학 청소년을 위한 국방부 운영 국가방위 인가법 사례 참고)
- 청소년복지지원법 대상 연령의 확대 및 확대된 대상 연령에 관한 서비스 내용 확충
- 후기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 내용 확대
-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 추가 필요
- 정신보건 관련 복지지원에 관한 내용 추가 필요
- 건강권 보장과 관련하여 건강검진 이후 과정에 대한 내용(치료, 개입 등) 추가 필요
- 아동복지법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명문화
-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 규정 추가 필요(시행규칙, 시행령 확대 등)
- 법 전반의 구체성, 실효성, 체계성 확대 필요
- 법개정시 현장의견 수렴 필요
- 쌍방향 온라인, 오프라인 원스톱 정보 제공 체계에 관한 내용 마련 및 법체계 포함
- 상담 뿐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의 복지서비스 노력 강구 및 관련 사항 법체계 포함 필요

-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에 대한 차별화, 구체화 필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조항의 의무성, 강제성 강화
-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방안 및 규정 마련 필요
- 위기청소년 서비스 신청 권한 대상 확대 필요
-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용 강화 필요
- 청소년복지 시설의 지역규모별 정확한 설치 기준 제시하여 시설 확충의 당위성과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개인정보 공유 원활화를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 노력 제시 필요
- 법체계의 전반적 수정·보완 필요: 국가와 지자체 책무 → 일반/위기/특별청소년 영역별 지원 애용 → 기관 및 시설 내용 순으로 법체계 조정하는 방안 고려 필요
-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부분을 특화된 영역으로 발전 필요
- 타부처 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 필요(장기적 접근 필요)
- 특화된 쉼터 개발 및 서비스 배정 시스템 마련 및 법규정 마련 필요
- 청소년복지시설 내 성적 지행 배려 내용 추가 필요 등

참고문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청소년과 미래: 2015 청소년정책 환경 분석보고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미래연구회.
- 김선애(2015). 청소년복지권의 성격과 증진 방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7(4), 93-114.
- 김영한·조아미·이승아(2013). 청소년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윤나(2012). 인권관점에 기반한 청소년기본법의 한계와 재조명. 법과인권교육연구, 5(1), 29-45.
- 김태균(2016).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위한 청소년활동의 반성과 향후과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2(2), 43-66.
- 박진규(2004).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6(2), 5-14.
- 법제처(2019). 2019년 제2기 법제실습과정(보건·복지분야). 세종: 법제처.
- 안미영(2017).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증의 고찰. 사법행정, 58(2), 43-52.
- 유영미(2016). 제개정 내용을 통한 청소년기본법 변화 고찰. 법학연구, 50, 103-125.

이용교(2004).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한계와 과제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2), 15-24.
이용교(2007).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방향. 청소년복지연구, 9(1), 1-16.
이유진·김영한(2017),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성혜(2011). 아동·청소년 복지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법제연구, 41, 43-84.
홍봉선·남미애(2018). 청소년복지론. 경기: 공동체.

Catalano, R. F., Berglund, M. L., Ryan, J. A., Lonczak, H. S., & Hawkins, J. D.
(2004).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findings on evaluation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program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98-12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
청소년기본법, <http://www.law.go.kr>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www.law.go.kr>
청소년활동 진흥법, <http://www.law.go.kr>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토론문

김 진 호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배 정 수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장

박 선 영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MEMO

MEMO

MEMO

MEMO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인 쇄 2019년 9월 23일

발 행 2019년 9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415-2114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